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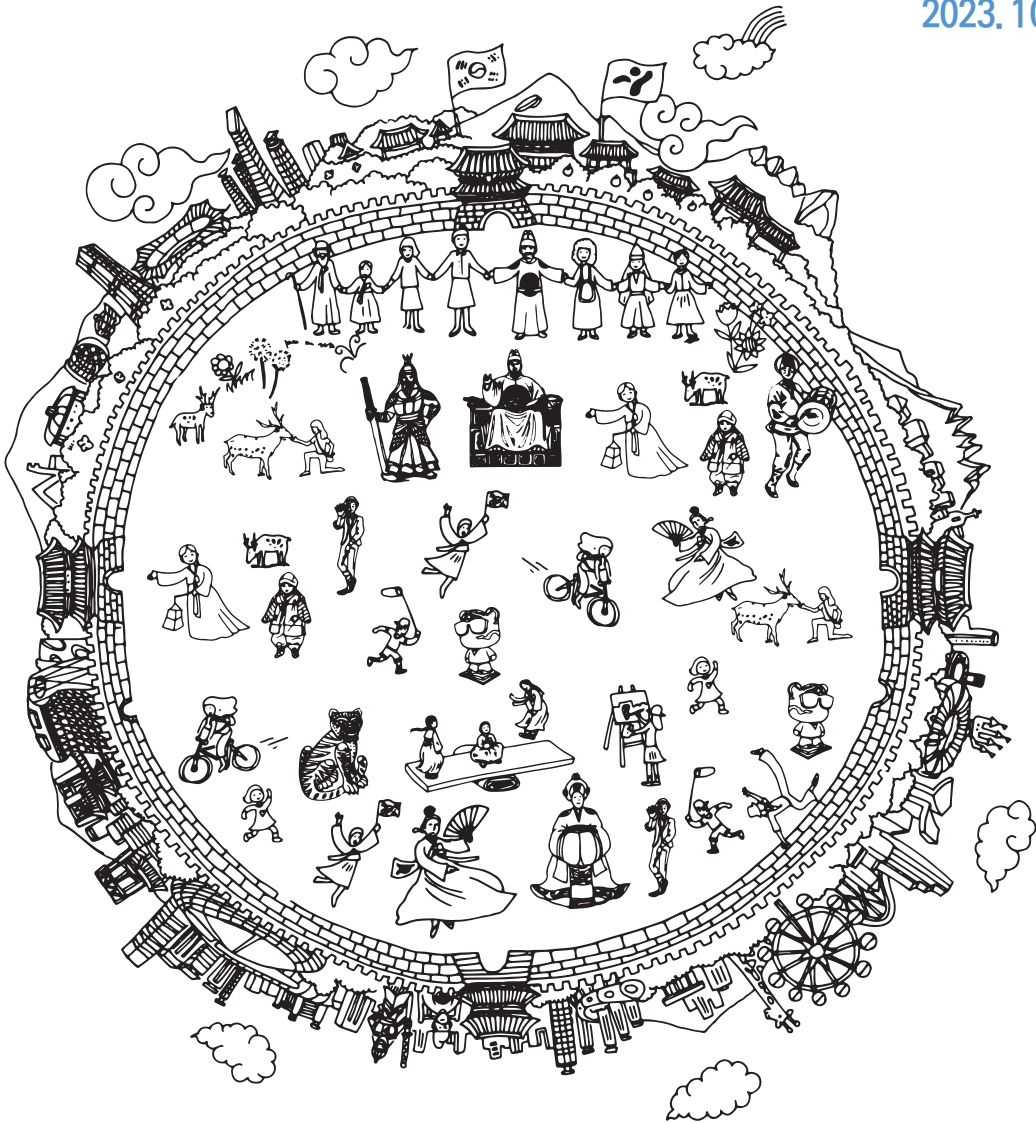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914호
2023. 10. 5.(목)



목 차

◆ 자치법규 등

[조 례]

제8865호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폐지조례	3
제8866호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4
제8867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
제886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	9
제8869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학생 행복 조례 폐지조례	15
제887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	16
제8871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18
제8872호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
제8873호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	22
제8874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4

◆ 고 시

제2023-431호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방화3구역)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6
제2023-432호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고시	46
제2023-433호	구로구 오류2동 버들마을 주거환경정비구역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53

◆ 공 고

제2023-2786호	도시계획시설사업(매현시민의숲 근린공원) 공사완료 공고	61
제2023-2789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공고	62
제2023-2792호	도시관리계획(서울 연신내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 공고	80
제2023-2799호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승인 공고	82

◆ 서울특별시교육청

[입법예고]

제2023-291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83
------------	--	----

◆ 구 고 시

제2023-55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중구)	103
-----------	---	-----

◆ 구 공 고

제2023-1826호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폐지)(안) 열람공고(구로구)	105
제2023-1599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작성을 위한 열람(안)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동작구)	106
제2023-170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송파구)	115

◆ 사업소고시

제2023-4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117
제2023-4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117
제2023-4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118
제2023-4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118

◆ 기 타

제2023-01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중랑소방서)	119
제2023-29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120

자치법규 등

[조 례]

◆ 서울특별시조례 제8865호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3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폐지이유와 주요내용 >

1. 폐지이유

가. 2022.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 청구 사무에 대한 주체가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지방의회로 바뀜.

나. 이에 따라 구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에 근거하여 마련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를 폐지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8866호**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3년 10월 5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교육규칙을 말한다.
2. “주민”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이 조례에 따라 주민이 제출한 의견의 규칙 담당부서를 말한다. 다만, 규칙 제정 의견인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주민이 제출한 의견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주민의 의견제출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의견제출 제외대상)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6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은 규칙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3명 이상의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교육감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없이 주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의견제출서 검토 및 결과 통보) ① 교육감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의견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3. 의견제출 내용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통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9조(의견의 반영) 교육감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교육감은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지방자치법」 제20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가. 2022.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시행에 따라 주민이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대하여 제정, 개정 또는 폐지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됨.
- 나. 제출된 주민 의견의 검토와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바, 서울특별시 교육규칙에 대한 주민 의견 검토와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근거 법령과 목적을 명시함(제1조~제2조)
- 나. 주민이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하 “제출의견”)을 제출하는 방법을 명시함.(제6조)
- 다. 주민의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와 결과통보의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 (제7조 ~ 제8조)
- 라. 주민의 제출의견에 대한 반응을 명시함.(제9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867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3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익제보 및 공익제보에 대한 협조를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제14조제1항제4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마.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 및 관계 법령의 준용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여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공익제보위원회의 공익제보자 선정 심의·의결 사항 일부 삭제(제10조 제1항 제2호)
- 나.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중 “원상회복 관련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 노무사 등의 수입료” 내용을 “공익제보 및 공익제보에 대한 협조를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으로 변경(제13조 제1항 제3호)
- 다.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조항 신설(제14조제1항제4호 마목)
- 라.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교육기관의 재정 증대나 수입 회복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내용을 “3년 이내”로 변경(제14조제5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886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3년 10월 5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방안을 마련하고 교원을 예우하며 상호 간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교원과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말한다.
2. “교원에 대한 예우”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3. “학교”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5.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교육활동 보호의 기본원칙)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2.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3. 교육감은 교육 정책을 수립할 때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학교의 교육환경은 교원의 전문적 역량과 학생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하며,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이를 회복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교직원과 학생, 보호자의 의견을 조화롭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아니 되며, 교육활동을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치유와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조사를 하는 경우 교원의 교육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교직원은 교육활동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교육주체 간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학생과 보호자는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여야 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제6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둔다. 다만, 유치원에는 유치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그밖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 학교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초기 대응(이하 “초기대응”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초기대응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리 지정된 업무 담당자가 인지 즉시 현장 개입
2. 관련자와 피해교원 일시 분리
3. 목격학생과 현장 안정화
4. 피해교원의 업무대행자 지정
5. 관련자가 학생일 경우, 보호자에 연락
6. 그 밖에 교육감이 초기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③ 보호조치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④ 제2항에 따라 초기대응을 한 학교장은 지체 없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 소집을 요청하고, 사안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한 학교장은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사항이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⑦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 또는 학교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데 드는 비용

제8조(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은폐 금지 등) ① 학교장은 제7조제4항 및 제7조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감은 제7조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료를 해당 학교 또는 학교장에 대한 업무 평가 등에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① 학교장은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
 - 다.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
 - 라.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 다.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
 - 라.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 다. 교원과의 상호 존중과 배려 및 소통 방법
 - 라.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을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보호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교원치유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전문인력 및 시설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① 교원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보호자 및 민원인의 민원 통합관리 등) ① 학교장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해 보호자 및 민원인의 민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 및 민원인의 민원이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라고 판단될 때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이 질병, 사고, 가족 장례 등으로 학교 출석이 어렵거나 늦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문자 메시지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학교에 적절한 통신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출입 제한 등의 조치) ① 학교장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학교 방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출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그 밖에 방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상행위, 시설물 점거, 소란행위 등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2. 교직원과 학생보호인력(「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에 따른 자를 말한다.) 등의 지시나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재차 불응한 경우

3. 총포도검류나 인화성 물질 등을 소지하거나 교직원 및 학생 등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출입증 발급 및 패용, 출입 목적 및 신원 확인 요청 등 학칙에 따라 정해진 출입 절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출입제한의 구체적인 요건과 일시적인 출입제한의 범위 등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③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침해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서 교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인 교원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④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교원의 심리적 피해의 회복 및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행정업무의 경감) 교육감은 교원의 행정업무를 경감하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교육활동보호) 교육감은 학교에서 교원과 함께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강사 등에 대한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가. 오랜 시간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은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상대적으로 교권에 대한 인식은 미흡했던 경향으로, 교사들은 도를 넘는 수업 방해와 교육활동 침해를 겪으면서도 학생들에 대한 정상적인 생활지도와 훈육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있음.

나. 보호받지 못하는 교사들이 교육 현장을 떠나는 현상이 가시화되고, 최근 학생들의 교사 폭행 사건이 주목을 받으면서, 교원에 대한 예우와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요구가 사회적으로 커지고 있는 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행·재정적 방안을 마련하여 교원을 예우하고 교육주체 상호 간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원', '교원에 대한 예우', '교육활동 침해행위' 를 규정함(제2조)

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본 원칙을 규정함(제3조)

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함에 있어 교육감에게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 청취 의무를 명시하고, 학교 구성원인 교직원과 보호자, 학생의 책무를 추가적으로 규정하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시 교원의 교육활동이 침해되지 않도록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책무를 부여하고자 함(제4조)

라.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규정함(제5조)

마.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제6조)

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를 규정함(제7조)

사. 예방교육에 관하여 규정함(제9조)

아.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제10조)

자.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제11조)

차. 보호자 및 민원인의 민원 통합관리 방안을 규정함(제13조)

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 출입제한 조치,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해 법률적인 분쟁에 당사자가 된 교원에 대한 소송비 지원, 교원의 심리적 피해 회복 및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4조)

타.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교육감의 역할을 규정함(제15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869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학생 행복 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학생 행복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2023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학생 행복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폐지이유와 주요내용 > —

1. 폐지이유

가. 본 조례는 행복이 갖는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학교 구성원의 행복 중심 정책추진을 목적으로 2021년에 제정되었으나 이후 관련 사업 추진 및 수립·시행된 계획이 전무하여 실효성이 없는 상태임.

나. 이에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학생 행복 조례」를 폐지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887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3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로 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불법촬영 예방시스템 등”이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화장실 내 설치하는 안심스크린, 안심거울, 안심벨 등 범죄예방 환경 설계를 위한 설비를 말한다.

제5조의 제목 “(불법촬영 점검 등)”을 “(불법촬영 점검계획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화장실에서의”를 “화장실 등에서의”로, “화장실 불법촬영”을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화장실”을 “화장실 등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불법촬영 예방 시설물 설치기준) ① 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 관련 시설에 화장실 설치 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변기 출입문을 제외하고는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의 빈 공간을 5mm 이하로 둘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기존 설치된 화장실에 대해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변기 출입문을 제외하고는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의 빈 공간을 5mm 이하로 두기 위해 안심스크린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최근 학교 내 불법촬영 범죄 발생 및 유포 등으로 인해 학생을 비롯해 교사·학부모의 불안감 상승은 물론 2차 피해 등의 발생이 우려되는바, 화장실 및 탈의실 등의 불법촬영에 대한 근원적 예방책 마련 필요.
- 나. 특히,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화장실 시설 및 장비 설치기준과 관련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라 화장실의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의 빈공간을 막는 안심스크린 등의 설치 및 설치기준에 대한 추가 조문을 개정하여 불법촬영을 통한 범죄 예방 피해 최소화 기대.

2. 주요내용

- 가. ‘불법촬영 예방시스템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제2조).
- 나. 교육감의 역할인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계획 등과 관련해 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 다. ‘불법촬영 예방 시설물 설치기준’을 상위법 개정에 근거해 규정함(제5조의2).

◆ 서울특별시조례 제8871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3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절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을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으로, 제12조의2 제1항 중 “「과학교육진흥법」 제3조”를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로,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이하 “과학전시관”이라 한다)”를,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이하 “융합과학교육원”이라 한다)”로,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전시관”을 “융합과학교육원”으로 한다.

제12조의3 중 “관장”을 “원장”으로, “과학전시관”을 “융합과학교육원”으로, 제12조의4 중 “과학전시관”을 “융합과학교육원”으로, 제12조의5 중 “분관”을 “분원”으로, “과학전시관”을 “융합과학교육원”으로 한다.

별표1 제목 중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을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으로, “분관명”을 “분원명”으로, “남산분관”을 “남산분원”으로, “동부분관”을 “동부분원”으로, “남부분관”을 “남부분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 을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 으로 명칭 변경 등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과학교육진흥법」 제3조’ 를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 로 수정(제12조의2)

나.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 을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 으로, ‘과학전시관’ 을 ‘융합과학교육원’ 으로, ‘관장’ 을 ‘원장’ 으로, ‘분관’ 을 ‘분원’ 으로 수정함(제12조의2 ~ 제12조의5, 별표1)

◆ 서울특별시조례 제8872호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3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6호 중 “채용, 정직, 해고, 전보”를 “정직, 해고, 전보”로 한다.

제6조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소속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휴직, 복직, 승급, 복무, 평가, 감봉, 견책, 퇴직, 보수

1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가. 정원으로 관리하는 특수운영직군

나. 기간제 근로자

19.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정직, 해고

가. 정원으로 관리하지 않는 무기계약직

나. 기간제 근로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11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위임된 공립학교 소속 정원직종 교육공무직원 채용 권한을 해제하고 본청으로 일원화하여 지역별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및 효율적 인력 운용 도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이 정원을 관리하는 공립학교 소속 교육공무직원 ‘교육장 채용 권한 해제’ (제5조제36호)

나. 학교장 채용 권한 대상을 ‘정원으로 관리하는 특수운영직군 및 기간제근로자’ 로 명확화 (제6조제18호)

다. 학교장 경징계(감봉·견책) 권한 대상을 ‘소속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 으로 명확화(제6조제17호)

라. 학교장 중징계(정직·해고) 권한 대상을 ‘소속 학교 정원으로 관리하지 않는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로 명확화(제6조제19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8873호**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3년 10월 5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교육행정국장”을 “안전총괄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을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후단 중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을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교육재정과장”을 “청사이전추진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재산관리담당사무관”을 “청사이전기획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재산관리담당사무관”을 “청사이전기획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가.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에서 2023. 7월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등의 조문 내용을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2023. 7. 1.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부서 명칭 등 일괄정비(제2조~제4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874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3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동반”을 “동반 상담 및 정신과 진료 등의 치유”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변호사 선임, 법률 자문 등의 법률 지원

6. 결석 등에 따른 가정학습에 대한 지원

제8조의2제3항 중 “위한 캠페인 등의”를 “위한 긴급전화와 신고함 설치, 설문조사, 캠페인 등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2023년 교육부의 ‘학교폭력 현황’에 따르면, 학교폭력 건수는 2013년 1만 8천 건에서 2022년에는 6만 건을 상회할 정도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경험률이 초등학교에서 가장 높은 정도로 저연령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
- 나. 또한, 어릴 적 학교폭력 피해를 겪은 대학생 절반 이상(54%)이 극단적 선택을 생각했고, 실제로 시도할 가능성이 피해를 겪지 않은 사람보다 2.6배 크다는 연구 결과도 나온 바 있음.
- 다. 이는 학교폭력 조치 결정 이후에도 가해 학생의 행정심판 청구 및 소송 제기 등으로 학교폭력 조치의 실효성을 저하시켜 피해학생의 고통과 어려움을 가중시켰기 때문임.
- 라. 따라서 교육감이 피해 학생을 적극적으로 치유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심리 상담과 정신과 진료 등의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고, 변호사 선임, 법률 자문 등의 법률 지원과 학교폭력으로 인한 결석 등에 따른 학습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가정학습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
- 마. 또한,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신고함 설치, 설문조사 실시 등의 신고제도 근거를 대폭 강화하고 이를 홍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피해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심리 상담과 정신과 진료 등의 치유 프로그램 지원(제8조제3호)
- 나. 피해학생에 대한 법률 지원(제8조제5호 신설)
- 다. 피해학생에 대한 가정학습 지원(제8조제6호 신설)
- 라. 피해신고 독려를 위해 교육감의 긴급전화와 신고함 설치, 설문조사, 캠페인 등의 실시 의무를 규정함(제8조의2제3항)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31호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방화3구역)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방화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218호(2007.07.25.), 제2007-385호(2007.10.25.), 제2010-105호(2010.03.25.), 제2012-192호(2012.07.26.), 제2012-252호(2012.09.20.), 제2014-132호(2014.04.03.), 제2016-194호(2016.07.07.), 제2017-305호(2017.08.17.), 제2017-355호(2017.10.10.), 제2018-119호(2018.04.19.), 제2018-136호(2018.05.03.), 제2020-145호(2020.04.16.), 제2021-61호(2021.02.04.), 제2021-392호(2021.07.22.), 제2022-78호(2022.02.24.), 제2022-364호(2022.08.25.), 제2022-514호(2022.12.22.)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방화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 변경없음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기 정	증 감	변 경	
방화재정비 촉진지구	주거 지형	강서구 방화동 609번지 일대	361,121.2	-	361,121.2	-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연도 : 변경없음

- 기준연도 : 2004년
○ 목표연도 : 2025년

3. 재정비촉진지구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 변경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변경

구 분			면 적(㎡)			비율(%)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총 계			361,121.2	-	361,121.2	100.0	
촉진지구	택지	소 계	253,967.2	증)183.0	254,150.2	70.4	
		주택건설용지	253,967.2	증)183.0	254,150.2	70.4	
	정비기반시설용지	소 계	103,046.0	감)183.0	102,863.0	28.5	
		도로	59,817.0	감)220.0	59,597.0	16.5	
		공원 및 녹지	13,066.0	-	13,066.0	3.6	
		광 장	326.0	-	326.0	0.1	
		학 교	27,485.0	감)7.0	27,478.0	7.6	
		공공청사	396.0	-	396.0	0.1	
		사회복지시설	656.0	-	656.0	0.2	
		문화시설	1,300.0	증)44.0	1,344.0	0.4	사회복지시설 중복
	기타	종교시설	4,108.0	-	4,108.0	1.1	

※ 변경사유 : 방화3구역 측량성과 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2) 인구·주택 수용계획 : 변경 (13,357인 / 5,166세대)

주택유형	계획세대(세대)			인구수(인)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5,166	증)31	5,197	13,277	증)80	13,357	2.57인 적용
존치구역 (존치관리, 존치정비구역)	904	-	904	2,323	-	2,323	방화2구역, 존치아파트(해태,청성)
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4,262	증)31	4,293	10,954	증)80	11,034	긴등마을구역, 방화6구역, 방화3구역, 방화5구역

※ 변경사유 : 방화3구역 건축심의 결과 반영에 따른 계획 세대수 변경으로 촉진지구 계획 세대수 변경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 변경

구 분	명 칭	개 소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교육시설	계	2	-	2	27,485	감)7.0	27,478	-
	방화중학교	1	-	1	13,277	감)7.0	13,270	· 방화3구역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방화중학교 면적 변경
	공향중학교	1	-	1	14,208	-	14,208	
문화·복지시설	계	5	-	5	2,352	증)44.0	2,396	
	문화시설	1	-	1	1,300	증)44.0	1,344	· 3구역(1개소) : 방화문화예술복합공간

구 분	명 칭	개 소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사회복지시설	3	-	3	656	-	656	· 3구역(1개소) : 어린이집, 아동청소년건강 지원시설 · 5구역(1개소) : 어린이집, 경로당 · 6구역(1개소) : 어린이집
	공공청사	1	-	1	396	-	396	· 6구역(1개소) : 공공청사

※ 변경사유 : 방화3구역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문화시설 면적 변경

4) 공원·녹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구 분	명 칭	개 소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공원 및 녹지시설	합 계	5	-	5	13,066	-	13,066	
	소 계	4	-	4	12,739	-	12,739	
	어린이 공원	4	-	4	12,739	-	12,739	· 방화2, 3, 5, 긴등마을구역 (구역별 1개소)
	계	1	-	1	327	-	327	
	경관녹지	1	-	1	327	-	327	· 긴등마을구역(1개소)

5) 교통계획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에 명시

6) 경관계획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에 명시

7) 촉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 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구성비 (%)	사업방식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계		361,121.2	-	361,121.2	100.0	-	-
재정비 촉진 구역	소 계	254,074.2	감)13.0	254,061.2	70.4	-	-
	긴등마을	31,631.0	-	31,631.0	8.8	주택재건축	기정
	방화6구역	31,554.2	-	31,554.2	8.7	주택재건축	기정
	방화3구역	92,152.0	감)13.0	92,139.0	25.6	주택재건축	변경
	방화5구역	98,737.0	-	98,737.0	27.3	주택재건축	기정

구 분	위 치		면 적(㎡)			구성비 (%)	사업방식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존치 지역	소 계		107,047.0	증)13.0	107,060.0	29.6	-	-
	존치 정비구역	방화2구역	35,076.0	-	35,076.0	9.7	-	기정
	존치 관리구역	기반시설 및 존치구역	71,971.0	증)13.0	71,984.0	19.9	-	변경

※ 변경사유 : 방화3구역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8) 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 변경

용도지역		면 적(㎡)			구성비(%)
		기 정	증 감	변 경	
계		361,121.2	-	361,121.2	100.0
주거지역	소 계	360,904.2	-	360,904.2	99.9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93,883.4	증)70.0	93,953.4	26.0
	제2종일반주거지역	226,890.6	감)70.0	226,820.6	62.8
	제3종일반주거지역	40,130.2	-	40,130.2	11.1
자연녹지지역		217.0	-	217.0	0.1

※ 변경사유 : 방화3구역 측량성과 반영 및 도로선형 조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9) 촉진사업별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 변경

구역구분	구분	구역명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비고
					기준(%)	상한(%)		
재정비 촉진구역	기정	긴등마을구역	공동주택	30	180	239.25	15	해발 57.86m 미만
	기정	방화6구역	공동주택	50	210	236	16	해발 57.86m 미만
	기정	방화3구역	공동주택	30	180	223	16	해발 57.86m 미만
	변경		공동주택	30	180	218	16	해발 57.86m 미만
	기정	방화5구역	공동주택	60	180	220.11	15	해발 57.86m 미만
존치 정비구역	기정	방화2구역	공동주택	60	180	230.00	15	해발 57.86m 미만

10)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 변경

구분	구역명	구역면적 (㎡)	기반시설면적(㎡)					
			계획 기반시설 ①	계획기반시설내 국공유지 ②	기존기반시설내 국공유지 ③	유상 매입시설 ④	순부담 ①-②-③-④	
							면적(㎡)	비율(%)
기정	간등마을 재정비촉진구역	31,631.00	3,809.00	183.00	634.00	-	2,992.00	9.4
기정	방화6재정비 촉진구역	31,554.20	5,410.95	2,602.30	1,822.62	-	986.03	3.1
기정	방화3재정비 촉진구역	92,152.00	16,569.90	3,873.40	5,017.60	-	7,678.90	8.3
변경		92,139.00	16,423.00	3,873.40	5,017.60	-	7,532.00	8.2
기정	방화5재정비 촉진구역	98,737.00	18,238.70	5,347.00	6,205.00	-	6,472.70	6.5

※ 계획기반시설 = 신설 정비기반시설 토지면적 + 공공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부지면적

※ 방화5재정비촉진구역 내 KH건축물(준처) 진출입을 위한 도로는 2017년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2017.7.11) 의견에 따라 순부담 면적에서 제외함(214㎡)

※ 방화3재정비촉진구역 내 기반시설 계획은 2022년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2022.5.3.) 의견에 따라 공공주택 15세대 포함

※ 변경사유 : 방화3구역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11)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 변경

구역구분	구분	구역명	계획세대수 (분양+공공)	분양	공공주택		비고
					세대	비율(%)	
재정비 촉진구역	기정	합계	4,262	4,066	196	4.6	
	변경		4,293	4,097	196	4.6	
	기정	간등마을	603	544	59	9.8	
	기정	방화6구역	557	537	20	3.6	
	기정	방화3구역	1,445	1,389	56	3.9	
	변경		1,476	1,420	56	3.8	
	기정	방화5구역	1,657	1,596	61	3.7	

12)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에 명시

13) 광고물 관리계획 : 변경없음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에 명시

14) 폐기물 관리계획 : 변경없음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에 명시

15) 기타계획(정보화계획, 에너지계획, 방재계획, 특성화계획 등) : 변경없음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에 명시

16)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가. 긴등마을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 : 변경없음

나. 방화6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 : 변경없음

다. 방화5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 : 변경없음

라. 방화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 : 변경

■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사업의 명칭 및 위치, 면적 : 변경

구 분	촉진사업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방화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사업)	강서구 개화동로25길 39 (방화동 615-103) 일대	92,152.0	감)13.0	92,139.0	

(2)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92,152.0	감)13.0	92,139.0	100.0	
정 비 기 반 시 설	소 계	15,308.0	감)196.0	15,112.0	16.6	
	도 로	8,829.0	감)233.0	8,596.0	9.6	
	공 원	4,610.0	-	4,610.0	5.0	
	학 교	569.0	감)7.0	562.0	0.6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1,300.0	증)44.0	1,344.0	1.4	사회복지시설 증복 결정
획 지	소 계	76,844.0	증)183.0	77,027.0	83.4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1	75,472.0	증)95.0	75,567.0	82.0	
	획지2	643.0	증)42.0	685.0	0.7	
	획지3	93.0	감)1.0	92.0	0.1	
	획지4	411.0	증)50.0	461.0	0.4	
	획지5	225.0	감)3.0	222.0	0.2	

(3)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변경
가)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2	14.7~20	집산 도로	414	방화동 618-9	방화동 산63-2	일반	-	-	
변경	중로	3	2	14.7~20	집산 도로	414	방화동 618-9	방화동 산63-2	일반	-	-	선형 일부조정
기정	중로	3	A	12~15	집산 도로	375 (308)	방화동 543-6	개화동로27길 13	일반	-	-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12	방화동 618-1	방화동 617-6	일반	-	-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82	방화동 612-190	방화동 산63-2	일반	-	-	
기정	소로	2	A	8	집산 도로	345	금남화로 13	초원로6길 15	일반	-	-	
기정	소로	2	148	8	집산 도로	107	방화동 614-31	방화동로52길21	일반	-	-	
기정	소로	3	2	4	국지 도로	40	방화동 596-1	금남화로1길 7	일반	-	-	

나) 공원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변경	4	공원	어린이공 원	개화동로27나길 8-9 (방화동 616-22)	4,610	-	4,610	서고제2012-192호 (2012.7.26.)	방화3구역 측량성과 결과 반영에 따른 공원 선형 일부 조정

다) 사회복지시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변경	1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	개화동로27나길10 (방화동 617-17)	1,300.0	증)44.0	1,344	-	대지 및 시설물 기부채납

※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중복결정 : 문화시설 연면적 900㎡, 사회복지시설 연면적 900㎡ (어린이집 600㎡, 아동청소년건강지원시설 300㎡)

▶ 건축물의 규모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건축물의 규모			비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정	1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60%이하	200%이하	5층이하	방화문화예술복합공간 어린이집, 아동청소년건강지원시설

라) 문화시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변경	1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	개화동로27나길10 (방화동 617-17)	1,300.0	증)44.0	1,344	-	대지 및 시설물 기부채납

※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중복결정 : 문화시설 연면적 900㎡, 사회복지시설 연면적 900㎡ (어린이집 600㎡, 아동청소년건강지원시설 300㎡)

▶ 건축물의 규모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건축물의 규모			비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정	1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60%이하	200%이하	5층이하	방화문화예술복합공간 어린이집, 아동청소년건강지원시설

마) 학교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변경	1	학교	방화 중학교	개화동로27길 9 (방화동 636-1)	13,277.0	감)7.0	13,270.0	서고제50호 (1982.2.4.)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 변경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명 칭	면적 (㎡)	명 칭	면적 (㎡)		합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정	방화3 재정비 촉진구역	92,152	획지1	75,472	강서구 개화동로25길 39 (방화동 615-103)일대	413	-	-	413	-	공동주택 부대복리 시 설
변경		92,139	획지1	75,567		413	-	-	413	-	

나) 건축시설계획

■ 기정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 획지 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상한	예정법적		
변경	방화3 재정비 촉진구역	92,152	획지1	75,472.0	강서구 개화동로25길 39 일대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30 이하	223 이하	해발 57.86m미만	
			획지2	643.0	강서구 금남화로3길 16	관계법령에 따름					
			획지3	93.0	강서구 개화동로25길 34	관계법령에 따름					
			획지4	411.0	강서구 방화동로7길10-6	관계법령에 따름					
			획지5	225.0	강서구 금남화로 13	관계법령에 따름					
○ 총세대수 : 1,445세대											
구분(전용면적)						세대수(세대)	구성비(%)	비고			
합 계						1,445	100.0				
공공 주택	소형주택	소 계				41	2.8				
		60㎡이하				31	2.1				
		60㎡~85㎡				10	0.7				
		기부채납	소 계				15	1.0			
			60㎡이하				10	0.7			
			60㎡~85㎡				5	0.3			
	분양		소 계				1,389	96.2			
		60㎡이하				245	17.0				
		60㎡~85㎡				653	45.2				
		85㎡초과				491	34.0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허용용적률 × {(1.3 × α토지) × 가중치 + (0.7 × α건축물)} = 185+185×{(1.3×0.085744)×0.96951+(0.7×0.0160)} = 207.06% ≒ 207% 이하 ※ 허용용적률 :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대책 반영 인센티브(5%) - 기준용적률 + 허용인센티브 = 180% + 5% = 185% ※ α토지 = 공공시설 제공한 면적(순부담)/공공시설부지로 제공 후 대지면적 = 6,471.3㎡/75,472.0㎡ = 0.085744 ※ α건축물 = 공공시설 제공한 면적(환산부지)/공공시설부지로 제공 후 대지면적 = 1,207.6㎡/75,472.0㎡ = 0.0160 ●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 230%이하 (건축계획 용적률 222.57%) ● 소형임대주택건설 용적률=(223%-207%)×30% = 4.8% ● 소형임대주택건설 연면적= 75,472㎡×4.8% = 3,622.66㎡ 이상 확보 필요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연면적	
						59.97㎡	20.72㎡	80.69㎡	31	2,501.39㎡	
						84.95㎡	27.68㎡	112.63㎡	10	1,126.30㎡	
						합 계		41	3,627.69㎡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획지1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 5m지정											
공공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① : 폭 8m 이상, 소로2-A~중로3-2호선 연결 ○ 공공보행통로② : 폭 6m 이상, 소로3-A~중로3-2호선 연결											
기타사항											
○ 공개공지 : 공공보행통로 결절부											

■ 변경

결정구분	구역구분		가구 / 획지 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상한	예정법적	
변경	방화3 재정비 촉진구역	92,139	획지1	75,567.0	강서구 개화동로25길 39 일대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30 이하	218 이하	해발 57.86m미만
			획지2	685.0	강서구 금남화로3길 16	관계법령에 따름				
			획지3	92.0	강서구 개화동로25길 34	관계법령에 따름				
			획지4	461.0	강서구 방화동로7길10-6	관계법령에 따름				
			획지5	222.0	강서구 금남화로 13	관계법령에 따름				

○ 총세대수 : 1,476세대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구분(전용면적)			세대수(세대)	구성비(%)	비고
합 계			1,476	100.0	
공공 주택	소형 주택	소 계	41	2.8	
		60㎡이하	31	2.1	
		60㎡~85㎡	10	0.7	
	기부 채납	소 계	15	1.0	
		60㎡이하	10	0.7	
		60㎡~85㎡	5	0.3	
분양		소 계	1,420	96.2	
		60㎡이하	354	24.0	
		60㎡~85㎡	765	51.8	
		85㎡초과	301	20.4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허용용적률×{(1.3× α 토지)×가중치+(0.7× α 건축물)}
 = 185+185×{(1.3×0.08316)×0.96951+(0.7×0.01647)} = 206.52% ≒ 206% 이하
 ※ 허용용적률 :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대책 반영 인센티브(5%)
 - 기준용적률 + 허용인센티브 = 180% + 5% = 185%
 ※ α 토지 = 공공시설 제공한 면적(순부담)/공공시설부지로 제공 후 대지면적
 = 6,283.9㎡/75,567.0㎡ = 0.08316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 획지 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상한	예정법적	
	※ α건축률 = 공공시설 제공한 면적(환산부지)/공공시설부지로 제공 후 대지면적 = 1,248.1㎡/75,567.0㎡ = 0.01647 ●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 218.0% (건축계획용적률 : 217.89%) ● 소형임대주택건설 용적률=(218%-206%)×30% = 3.6% ● 소형임대주택건설 연면적= 75,567㎡×3.6% = 2,720.40㎡ 이상 확보 필요									
	전용면적		공공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연면적	
	59.94㎡		20.96㎡		80.90㎡		31		2,507.90㎡	
	84.90㎡		26.81㎡		111.71㎡		10		1,117.10㎡	
			합 계				41		3,625.00㎡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획지1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 5m지정									
공공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① : 폭 8m 이상, 소로2-A~중로3-2호선 연결 ○ 공공보행통로② : 폭 6m 이상, 소로3-A~중로3-2호선 연결									
기타사항	○ 공개공지 : 공공보행통로 결절부									

※ 시설물기부채납 연면적 : 문화시설 900㎡, 사회복지시설 900㎡(어린이집 600㎡, 아동청소년건강지원시설 300㎡)

※ 공공주택 기부채납 : 전용 59㎡ 10세대(연면적 1,438.5㎡), 전용 84㎡ 5세대(연면적 1,004.89㎡)

※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대책 반영 인센티브(5%)

- 단독주택재건축세입자대책(주거사업과-4568.2019.4.25.)반영. 현 사업단계에서 손실보상 규모와 대상자를 파악하기 어려워 손실보상에 대한 용적률인센티브 5%를 적용하고, 향후 관리처분단계에서 세입자

손실보상 규모가 확정된 후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용적률계획 등을 재 조정(최대 10%이내)

※ 방화3구역 측량성과 결과 반영, 건축심의 결과 세대수 반영에 따른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변경

▶ 공공시설 기부채납 계획 및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기부채납(㎡)		세부용도	관리청	비고
			대지면적	건축물/현금 건축연면적(㎡)			
①	㉠	문화시설	방화동 617-17 일대	1,344	900㎡	방화문화예술복합공간	강서구
②	㉡	사회복지시설1			600㎡	구립어린이집 (아이슬어린이집)	강서구
③	㉢	사회복지시설2			300㎡	-	서울특별시

※ 향후 토지평가 및 건축계획 등에 따라 건축연면적이 조정될 수 있으며, 세부용도는 서울시 기부채납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추후 확정함.

▶ 공공주택 기부채납 계획

구분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세대수	제공면적	비고
기 정	합 계			15	2,164.20㎡	
	전용59㎡	80.69㎡	127.07㎡	10	1,270.70㎡	
	전용84㎡	112.63㎡	178.7㎡	5	893.50㎡	
변 경	합계			15	3,625.00㎡	
	전용59㎡	80.90㎡	143.85㎡	10	2,507.90㎡	
	전용84㎡	111.71㎡	200.87㎡	5	1,117.10㎡	

(5) 정비사업 시행 계획 : 변경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기존	계획	증	
기정	주택 재건축사업	구역지정(변경)일로 부터 4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신청	주택재건축 조 합	1,142	1,445	증)303	-
변경	주택 재건축사업	구역지정(변경)일로 부터 4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신청	주택재건축 조 합	1,142	1,476	증)334	-

(6) 가구 및 획지 계획 : 변경

도면 번호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구성비(%)	
				기 정	증 감	변경		
계	-	77,027.0	-	76,844.0	증)183.0	77,027.0	100.0	-
①	I	77,027.0	1	75,472.0	증)95.0	75,567.0	98.3	획지
			2	643.0	증)42.0	685.0	0.8	획지
			3	93.0	감)1.0	92.0	0.1	획지
			4	411.0	증)50.0	461.0	0.5	획지
			5	225.0	감)3.0	222.0	0.3	획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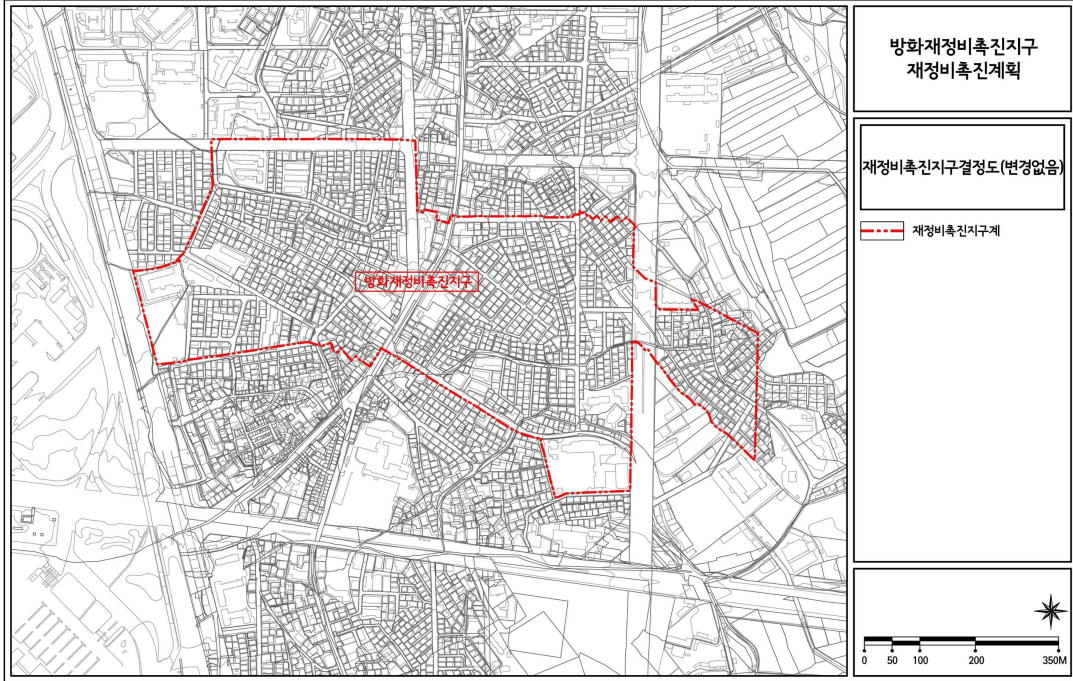
(7)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변경

구분	소형주택 공급면적(㎡)	세대수	세대규모(전용)		비고
			전용면적(㎡)	공급면적	
기정	3,627.69㎡	31	59.97	80.69	3,630.49㎡(계획) > 3,622.66(기준)
		10	84.95	112.63	
변경	3,625.00㎡	31	59.94	80.90	3,625.00㎡(계획) > 2,720.40㎡(기준)
		10	84.90	11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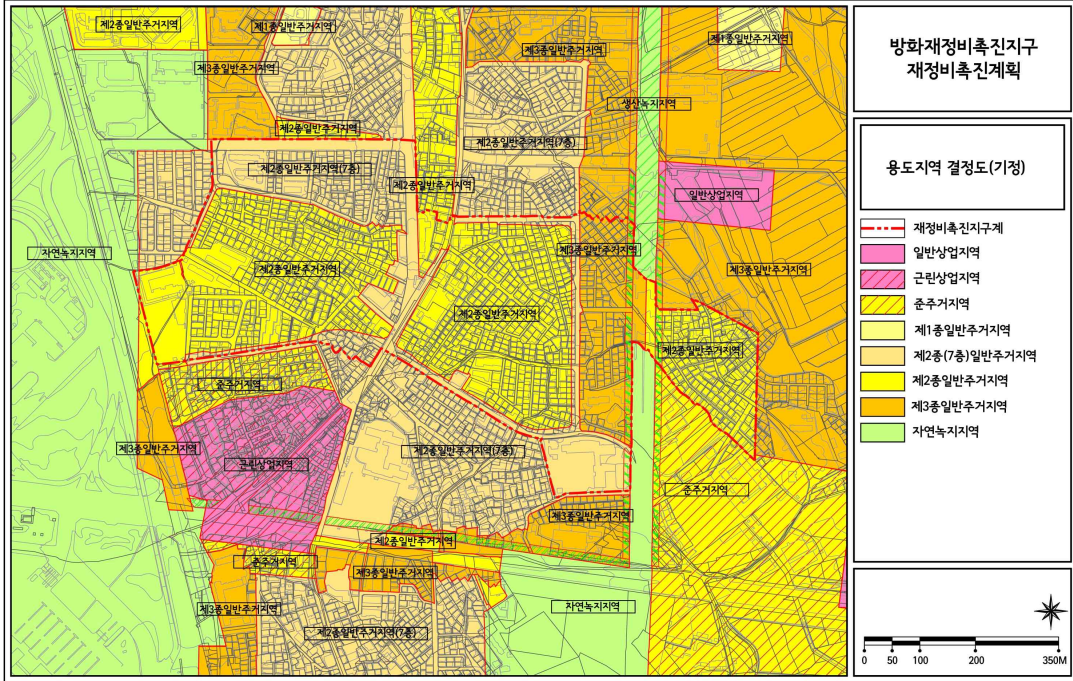
- 기타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수립 관련 사항은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서」에 명시
-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서」 참조 : 비치한 도서와 같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02-2133-7222) 및 강서구 도시재생과(☎ 02-2600-6547)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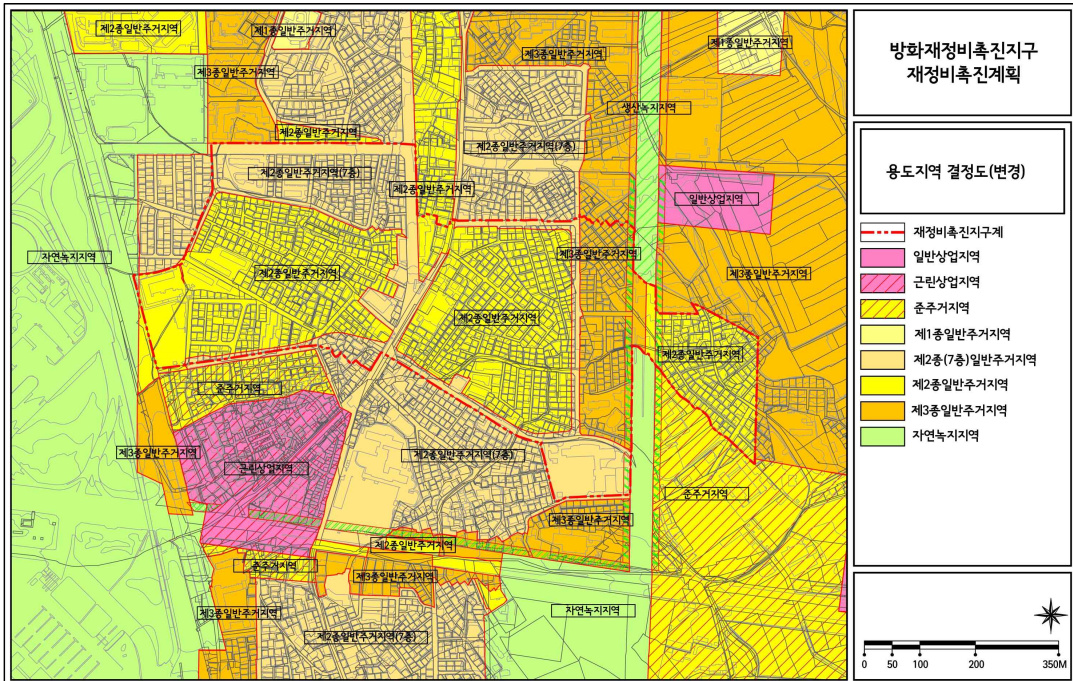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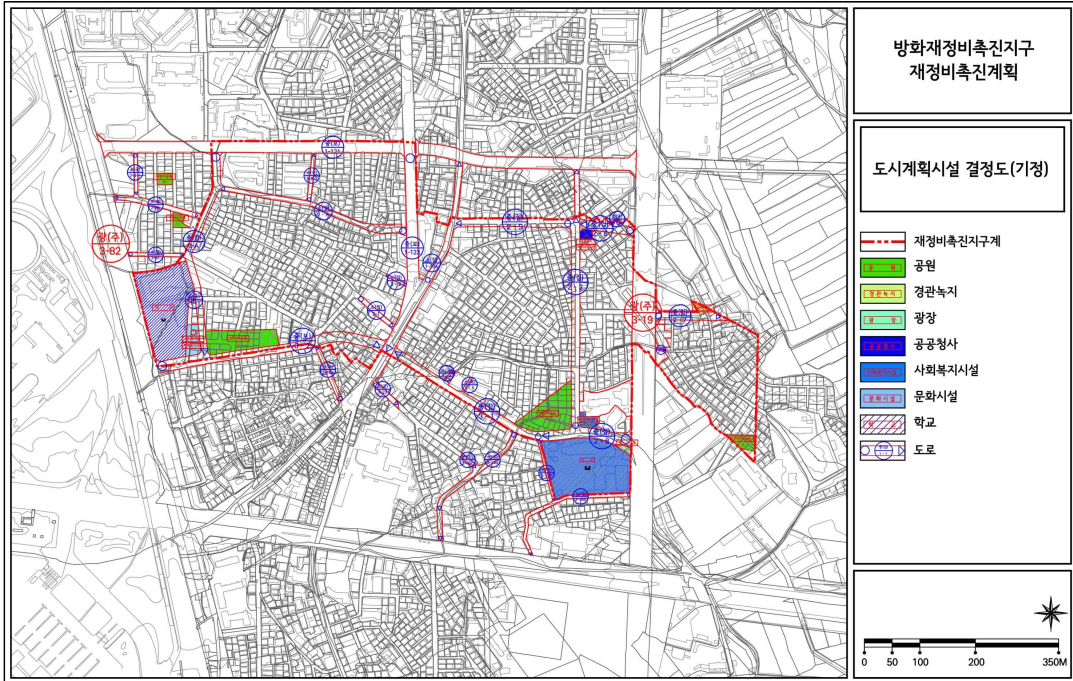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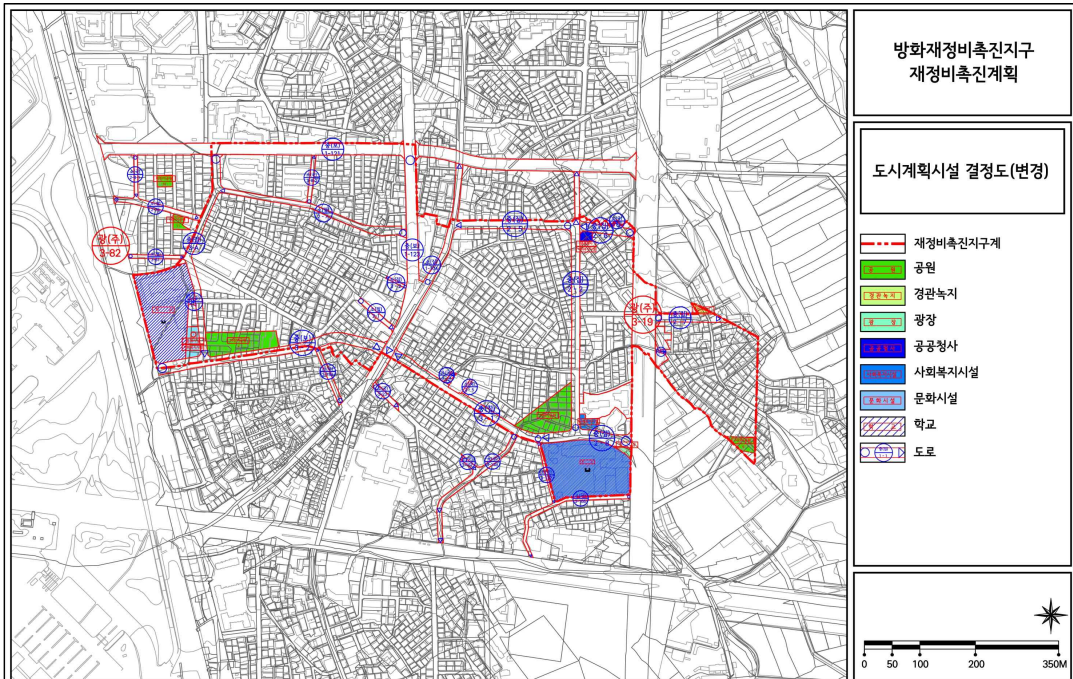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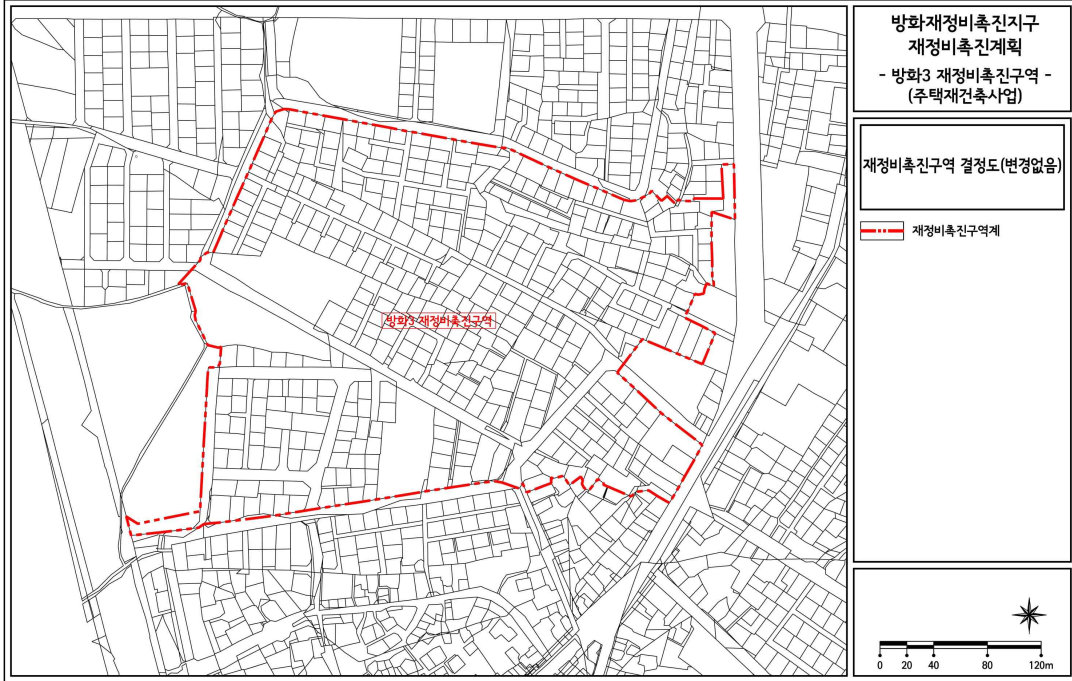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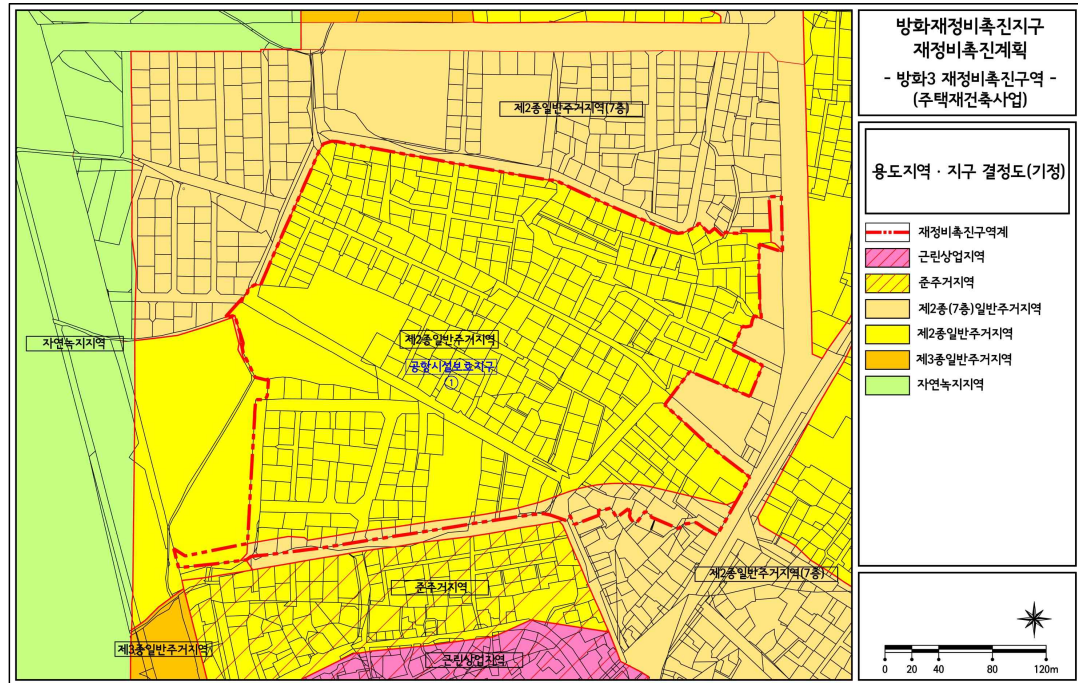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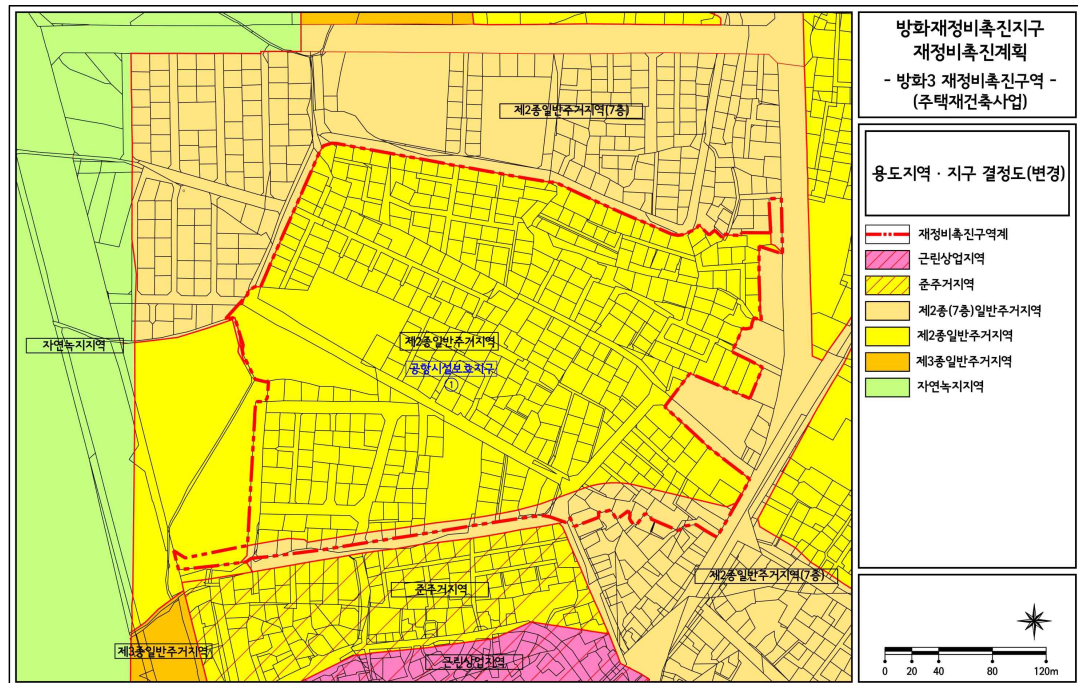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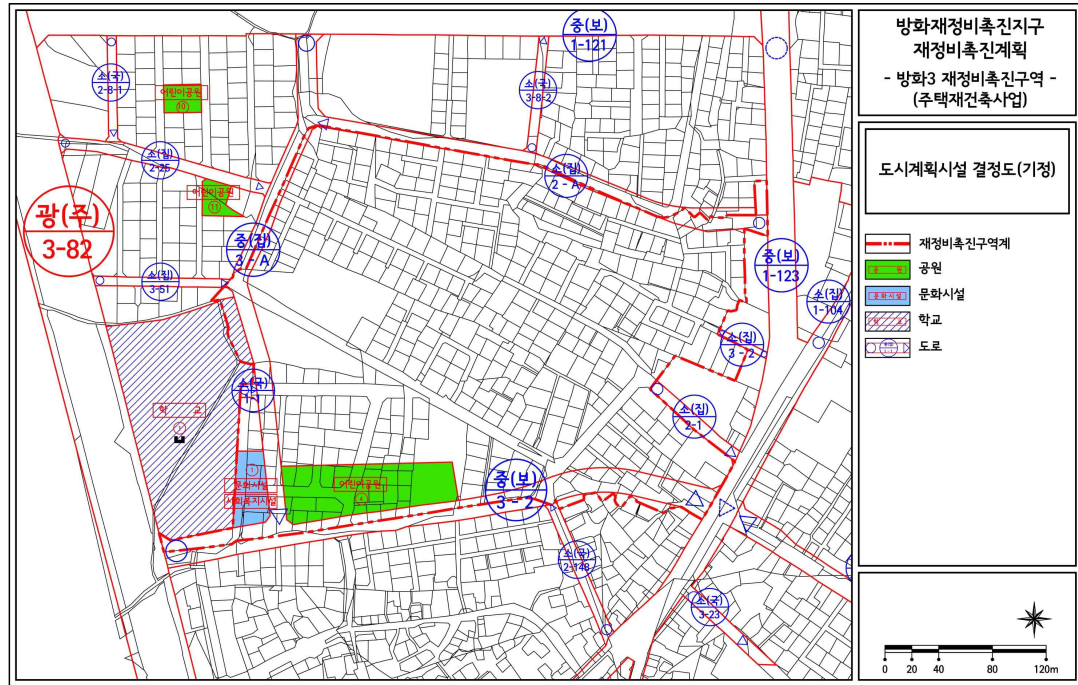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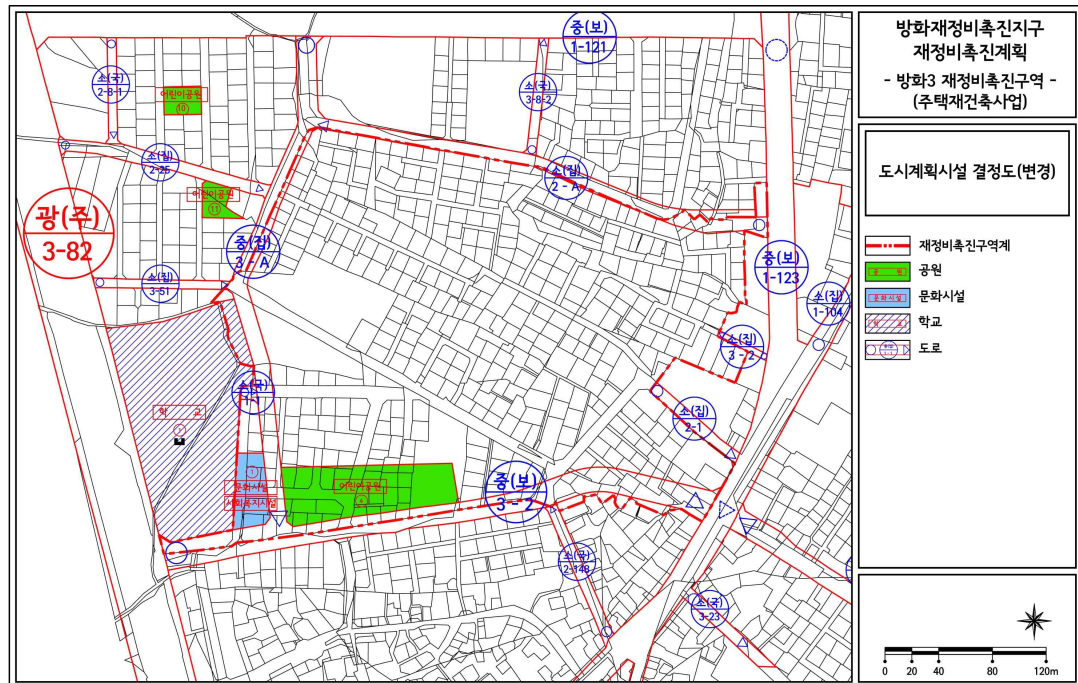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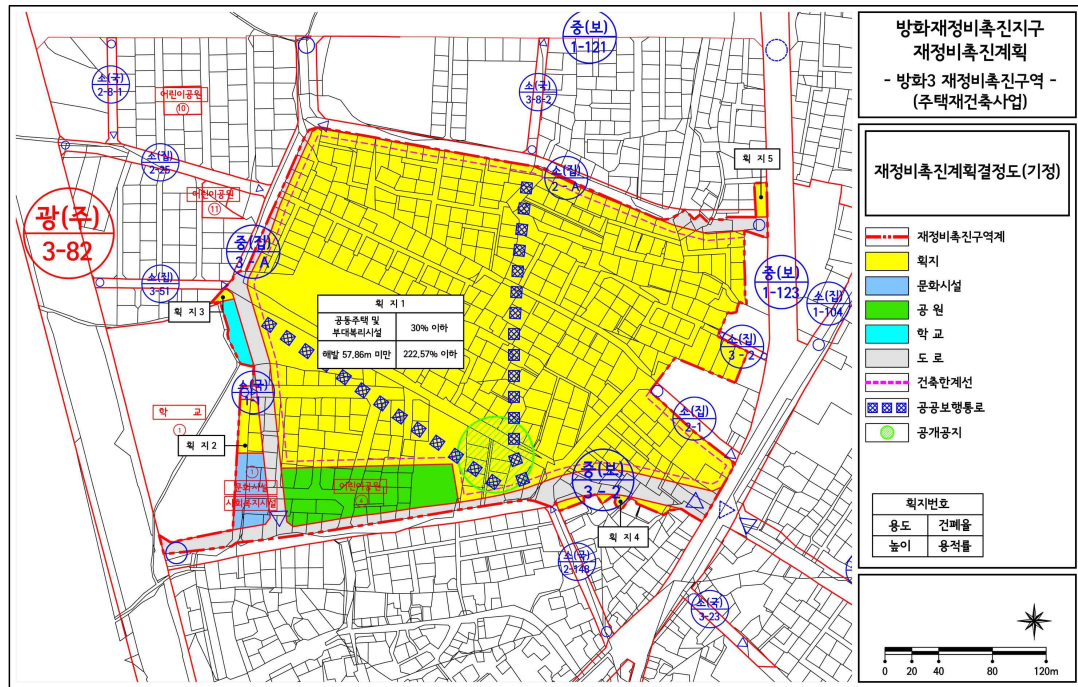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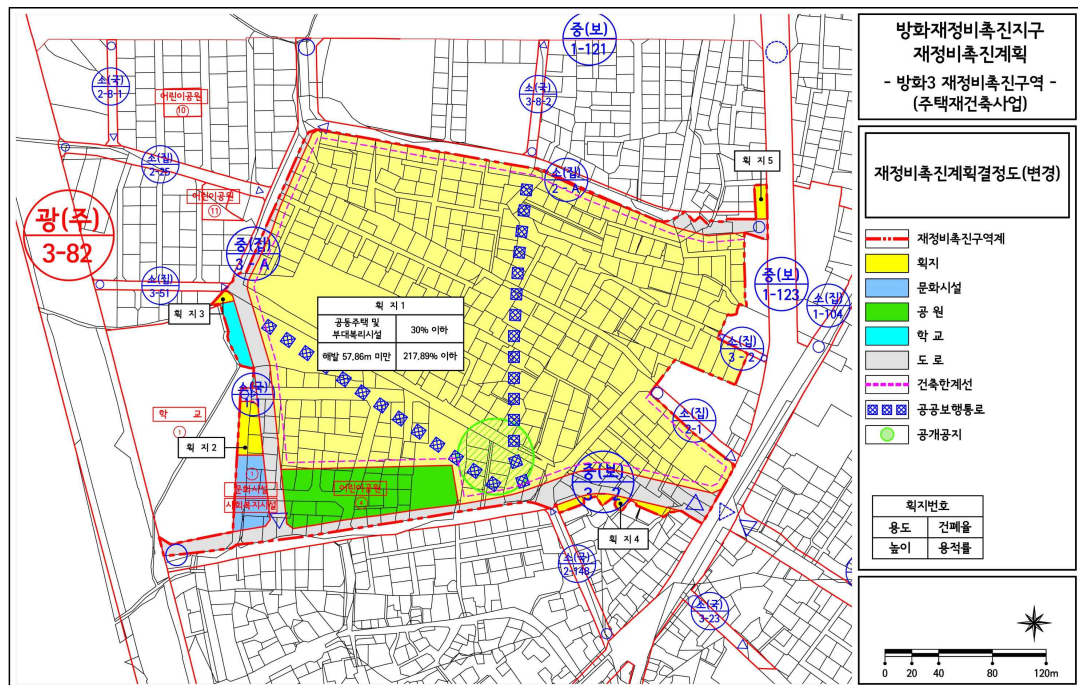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기정)도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32호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570호(2018.7.5.)로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 공고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49호(2019.8.1.)로 수립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16호(2021.9.23.)로 변경 고시된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현황 (변경)

가. 지역의 명칭 :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개요

지 역 명	유 형	위 치	면 적	비고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근린재생형 (중심시가지형)	금천구 독산동 292번지 일대	약 232,000㎡	

다. 사업기간 : (기정) 2017년~2023년

(변경) 2017년~2024년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가. 계획의 비전 및 목표 (변경 없음)

나.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변경)

1) 도시재생사업 및 파급효과 (변경)

○ 마중물사업: 3개 부문, 6개 사업 (변경)

사 업 명		사업내용	파급효과	비고
산업 재생	산업문화 여울림센터 조성사업	•교워킹스페이스 조성 •공동판매장 •마을카페&빨래방, 휴게실 •청년임대주택	•지역산업지원 시설 확충으로 산업지역 활력증진 •근로복지 시설 확충으로 근로환경 개선 •청년임대주택을 통해 독산동 청년 근로자 주거안정화/ 산업생태계의 안정적 일자리 공급체계 구축	기정

사 업 명		사업내용	파급효과	비고
		●서울형키즈카페 ●작은도서관 ●금천시니어클럽 ●우리동네기움센터/마을카페 ●공공임대주택	●생활편의시설 및 지역산업지원 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의 제공 및 안정적 일자리 공급체계 구축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독산동 청년근로자 및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화	변경
	창업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인큐베이팅프로그램 운영 ●독산산업문화 창업포럼	●예비창업인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직업역량 배양 및 민간일자리 진입 촉진	
우시장 상권 재생	우시장 클린인프라 조성사업	●우시장 악취개선 사업	●우시장 일대 악취 및 위생환경 개선을 통해 상인 및 주민불편 해소	
		●우시장 경관개선 사업	●낙후된 시장 이미지 개선 및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 ●독산동 우시장 지역정체성 강화 및 방문객 증대에 기대	
	상권활성화 여울림센터 조성사업	●순환형 상생협력상가 조성 ●상권활성화 공공지원센터	●동지내몰림 방지 및 상인들의 장기간 안정적인 영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상권 보호기대 ●우시장 육성과 활성화 도모를 위해 네트워크 갖춘 민간조직 활용하여 전문적·효율적 지원	기정
		●순환형 상생협력상가 등 ▶판매공간, 다목적공간, 쉼카페, 전시·관람공간	●동지내몰림 방지 및 상인들의 장기간 안정적인 영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상권 보호기대 ●우시장 관련 지역특화공간을 확충하여 거점시설의 활용도와 공간 효율성 제고	변경
문화 재생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주민역량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마을카페 '독산사랑방' 운영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확보 및 공감대 확장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 ●지역 복합공간 및 소통공간 마련	
	'독산 여울림길' 문화가로 조성사업	●생활안전조성사업 ●스트리트 뮤지엄 및 마을 탐방로 조성 ●독산3색 여울림 페스티벌	●생활 안전 확보 및 미관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구축 ●지역주민의 예술향유 증대 및 예술가 일자리 창출 ●지역의 숨은 지역자산을 발굴하여 동네 장소성과 지역이미지 제고 ●주민참여형 축제 개최/지역사회 구성원 간 교류와 소통의 장 마련	

※ 향후 세부 사업계획 수립·변경 및 사업시행 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 협력사업: 2개 부문, 8개 사업 (변경 없음)

다. 재원조달계획 (변경)

사 업 명			사업비(억원)					비고
			계	국비	시비	구비	공기업	
합계			697.08	225.9	260.4	191.6	19.18	
마중물 사업 합계			375	150	225	-	-	
마 중 물 사 업	1	산업문화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215	86	129	-	-	기정
			263	132	131	-	-	변경
	2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4	-	4	-	-	기정
			2	-	2	-	-	변경
	3	우시장 클린 인프라 조성사업	67	31	36	-	-	기정
			21	4	17			변경
	4	상권활성화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41	19	22	-	-	기정
			41	-	41	-	-	변경
	5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34	10	24	-	-	기정
			34	7	27			변경
	6	독산어울림길 문화가로 조성사업	14	4	10	-	-	기정
			14	7	7	-	-	변경
협력사업 합계			322.08	75.9	35.4	191.6	19.18	
공기업	1	상권활성화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19.18	-	-	-	19.18	
		산업문화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지 원 사 업	2	그린푸줏간 조성사업	180.4	50.9	20.4	109.1	-	
	3	금천 뮤지컬스쿨 조성사업	50.0	25	15	10	-	
	4	독산역 주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4.4	-	-	4.4	-	
	5	사물인터넷(IoT) 도시조성 실증지역 조성사업	2.5	-	-	2.5	-	
	6	독산동 우시장 특화상권 활성화사업	2.2	-	-	2.2	-	
	7	「(가칭)금천어르신복지센터」 건립	55.4	-	-	55.4	-	
	8	도시경관개선사업	7.0	-	-	7.0	-	
	9	「서울은 미술관」 공공미술 프로젝트	1.0	-	-	1.0	-	

※ 향후 세부 사업계획 수립·변경 및 사업시행 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라. 예산 집행계획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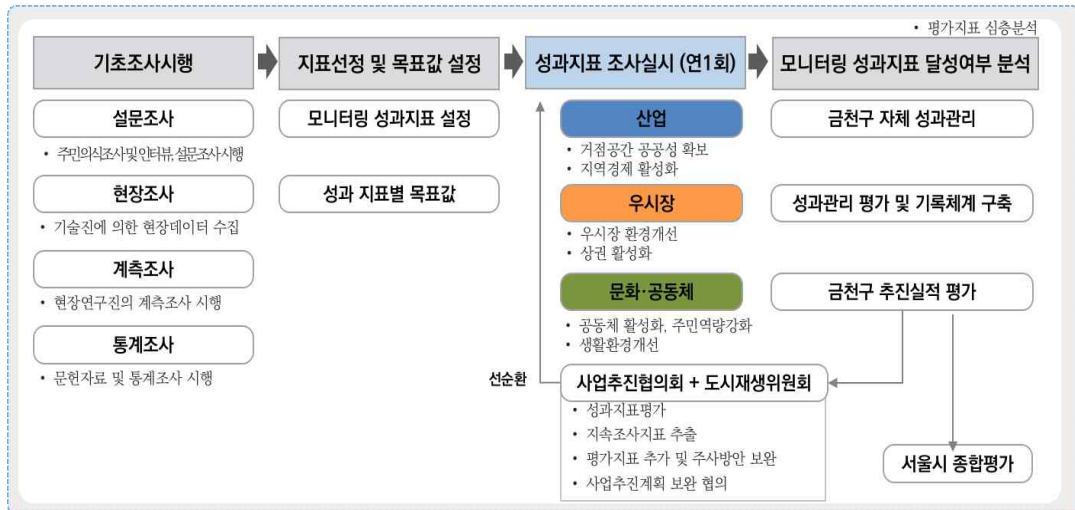
사 업 명	사업비(억원)							비고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마중물 사업 합계	375	34.9	233.1	82.1	16	8.9	-	기정
	375	37	192	78	21	13	34	변경
1 산업문화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215	24	166	20	5	-	-	기정
	263	24	166	24	9	13	27	변경
2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4	-	1	1	1	1	-	기정
	2	-	1	-	1	-	-	변경
3 우시장 클린 인프라 조성사업	67	1.8	51.2	14	-	-	-	기정
	21	2	13	6	-	-	-	변경
4 상권활성화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41	-	-	39	2	-	-	기정
	41	-	-	34	-	-	7	변경
5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34	6.8	6.8	6.8	6.8	6.8	-	기정
	34	9	9	11	5	-	-	변경
6 독산어울림길 문화가로 조성사업	14	2.3	8.1	1.3	1.2	1.1	-	기정
	14	2	3	3	6	-	-	변경

※ 향후 세부 사업계획 수립 · 변경 및 사업시행 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마.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계획 (변경)

1) 평가 및 점검계획 (변경)

- 모니터링 추진 프로세스 구축 : 부문별 평가지표 구분 조사 실시(연1회)
- 사업추진협의회와 도시재생위원회를 통한 평가 및 보완 피드백 체계 마련



<모니터링 평가 추진절차>

※ 「2030 도시재생전략계획」 성과평가방안 준용(문구 신설)

2) 모니터링 계획 (변경)

○ 추진과정 모니터링 (변경 없음)

○ 성과 모니터링 (변경)

[공통항목에 대한 사업성과] - 변경 없음

[특화항목에 대한 사업성과] - 변경

구 분		항 목	내 용	비고
산업 재생	산업문화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앵커시설 이용객수	산업·주민활동 복합거점 이용객수	기정
		앵커시설 인지도	산업집적단지로서 인지도	
		청년지원주택 입주	청년지원주택 입주	
		앵커시설 이용객수	산업·주민활동 복합거점 이용객수	변경
		앵커시설 인지도	산업집적단지로서 인지도	
		공공지원주택 입주	공공지원주택 입주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창업프로그램 참여자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참여자수	-
		신규창업 건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창업성과	-

구 분		항 목	내 용	비고
우시장 상권 재생	우시장 클린인프라 조성사업	우시장 위생환경 만족도	우시장 위생환경 만족도 지속 모니터링	-
		우시장 환경개선 만족도	우시장 거리 환경 등 만족도	-
	상권활성화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순환형 상생협력상가 이용 점포수	동지내몰림 방지대책에 대한 상생협력상가 입주점포수	기정
		순환형 상생협력상가 등 이용 점포수 (판매공간, 다목적공간, 쉼카페, 전시관람)	동지내몰림 방지대책에 대한 상생협력상가 등 입주 점포수	변경
문화 재생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역량강화 및 공동체 프로그램 참여자수	공동체 활동 및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여자수 모니터링	-
		지역이미지	지역주민, 방문객, 상인 등 지역인식변화 평가	-
	독산어울림길 문화가로 조성사업	보행환경 만족도	보행환경, 안전 등 보행환경 만족도	-
		지역축제 만족도	우시장 축제, 3색축제 만족도	-

바.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 해당없음

사.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3. 관련 도면 : 붙임 참조

- 1) 위치도 1부
- 2) 도시재생사업 구상도 1부

4. 관련서류 열람

관련 서류는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서부권사업과(☎ 02-2133-1565) / 금천구 주거재생과(☎02-2627-1867,1868)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서울시 홈페이지(고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위 치 도



물임 2

도시재생사업 구상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33호

구로구 오류2동 버들마을 주거환경정비구역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제2018-14호(2018.01.18.)로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구로구 오류동 147번지 일원 「오류2동 버들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구역변경사유 :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됨에 따라 오류2동 버들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과 중첩되는 구역 일부를 해제하여 주민 숙원 사업인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고자 함

2023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장

1. 정비구역의 지정 조서

가. 정비구역의 명칭 : 오류2동 버들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나.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정비구역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오류2동 147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 정비구역	구로구 오류2동 147번지 일대	169,309.2	감)1,848.8	167,460.4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169,309.2	감)1,848.8	167,460.4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도로	도시계획도로	18,780.2	-	18,780.2	11.2	
		현황도로	10,997.1	-	10,997.1	6.6	
	학교용지		15,229.0	-	15,229.0	9.1	
공동이용시설			304.0	-	304.0	0.2	
주택용지			123,998.9	감)1,848.8	122,150.1	72.9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구역과 중첩되는 부분제척

2) 용도지역 · 지구 결정조서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소계	169,309.2	감)1,848.8	167,460.4	100.0	-
제1종일반주거지역	26,226.7	-	26,226.7	15.7	-
제2종일반주거지역	11,431.1	-	11,431.1	6.8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01,676.4	-	101,676.4	60.7	-
제3종일반주거지역	29,975.0	감)1,848.8	28,126.2	16.8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구역과 중첩되는 부분제척

3)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가) 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75	15	국지도로	610	오류동174-2 (중로1-112)	오류동135-6 (광로1-32)	일반도로	-	서고410호 (1978.08.14.)	-
기정	소로	2		8	국지도로	336	중로2-175	중로1-112	일반도로	-	서고506호 (1980.10.30.)	-
기정	소로	2	189	8	국지도로	546	오류동 136앞	오류동 138서측	일반도로	-	서고35호 (1969.01.18.)	-
기정	소로	2	190	8	국지도로	164	오류동58-5	오류동 136-2서측	일반도로	-	서고35호 (1969.01.18.)	-
기정	소로	2	191	8	국지도로	136	오류동135	오류동 135-1	일반도로	-	서고35호 (1969.01.18.)	-
기정	소로	2		8	국지도로	110	오류동 166-10	오류동 156-15	일반도로	-	서고341호 (1978.07.08.)	-
기정	소로	3	6	6	국지도로	110	오류동 146-1	오류동 147-1	일반도로	-	서고160호 (1989.03.30.)	-
기정	소로	3	216	6	국지도로	438	오류동 155-1남측	오류동 147-16	일반도로	-	서고35호 (1969.01.18.)	-
기정	소로	3	217	6	국지도로	144	오류동 156-4서측	오류동 156-15앞	일반도로	-	서고35호 (1969.01.18.)	-
기정	소로	4	135	4	국지도로	220	오류동 145-29앞	오류동 145-16앞	일반도로	-	서고35호 (1969.01.18.)	-

나) 학교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학교	초등학교	구로구 오류동 190-2일대	15,229.0	-	15,229.0	서고제358호 (1980.10.28.)	현명칭 오류남초등학교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공동이용시설 (마을회관)	오류동 136-18, 19	304	-	304	

※ 설치계획(규모, 시행방법 등)은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결정 예정

5)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구분	대상건축물	정비·개량계획	지원계획	비고
기정	490	존치 (신축, 개보수 등)	주택개량 : 신축비용 융자지원 (서울특별시 주택개량 융자지원제도 적용)	
변경	479	존치 (신축, 개보수 등)	주택개량 : 신축비용 융자지원 (서울특별시 주택개량 융자지원제도 적용)	감)11개 동

※ 서울시 주택개량 융자지원제도(서울시 관련부서의 지원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나) 건축물의 주용도 등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비고
주용도	○ 관계법령에 따름	
건폐율	○ 근거조항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관계법령에 따름)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이하	
용적률	○ 근거조항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관계법령에 따름)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50%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0%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50%이하	
높이/층수	○ 관계법령에 따름	

6)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도시경관	○ 버들마을 나들길 개선(장미담장, 노후·담장개선, 담장벽화)을 통해 버들마을 가로경관 개선 ○ 버들마을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안으로 마을의 도시경관을 지속적, 장기적으로 개선 유도	
환경보전	○ 버들마을 생활가로 개선으로 마을의 정체성을 확보하여 마을의 가로환경 보전 ○ 계단, 경사로 등에 친환경 염화칼슘을 보관 및 사용하여 환경보전에 기여 ○ 건축 인허가시 제안사항으로 신재생에너지 설치, 옥상녹화, 성절토금지 등 환경보전 유도	
재난방지	○ 도로 정비시 하수관거 준설(배수시설 통합정비) ○ 도로안전을 위해 도로재포장 및 미끄럼 방지 포장(그루빙 설치, 스템프 공법) ○ 화재사고 방지를 위한 공중선 정비	

7)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구분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 예상 세대수	비고
주거환경 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또는 확대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구로구청장	해당사항 없음	-
	주택의 보전·정비·개량 및 신축하는 방법	계획수립이후	토지등 소유자		-

8)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교육환경 현황	- 대상지내 초등학교 1개소 및 유치원 2개소 입지 - 사업대상지의 일부 학교보건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에 해당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	- 학교 보건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동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한 시설의 설치를 금지함	

9)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 반영사항	비고
자연 환경	1.생태면적률	일반주택 20%이상 공동주택 30%이상	○	• 운영시 생태면적률 기준에 따름	• 건축물 신축시 관련규정에 의거 조정 녹지 최대확보	-
	2.녹지네트워크	녹지평가지표1	○	• 시가화지역에 해당 • 특별한 등,식물상은 없음	• 옥상녹화 및 텃밭 등 조성으로 녹지를 증가 유도	-
	3.지형변동	지형변동의 최소화	○	• 지형변동 영향 미미함	• 지형에 순응한 계획권장	-
	4.비오톱 및 등·식물상	3등급	○	• 비오톱유형평가 4~5등급 • 특별한 식생 분포 없음	• 비오톱 고립화 방지를 위해 대지내 조경공간 등을 분산배치 유도	-
	5.일조	일조침해 최소화	○	• 사업대상지는 대부분 4층 이하의 단독 및 다세대 밀집주거지역	• 건축물 신축시 관련규정 준수	-
	6.바람 및 미기후	바람 및 미기후 변화 최소화	○	• 사업대상지는 대부분 4층 이하의 단독 및 다세대 밀집주거지역으로 바람길에 미치는 영향 미비	• 개별 대지 내 장치물 최소화 유도	-
	7.에너지	에너지 절약계획수립	○	• 에너지 절약에 대한 주민 관심 높음	• 신재생에너지 자원사업 연계 및 계획 유도	-
	8.경관	주요 경관자원의 보전	○	• 저층주거지로 낮은 스카이라인 형성	• 건축물 신축 및 리모델링 시 주변과 조 화로운 건축물계획 유도	-
		조망권 확보	○	• 고층건물 미입지	• 주변지역과의 연속적 경관에 위배되지 않는 경관계획 권장	-
		개방적 가로경관 형성	○	• 현재 내부도로가 협소하여 가로 녹화 는 부족한 실정	• 조경공간의 가로변조성 유도 등을 통 해 가로 녹시를 향상	-
9.휴식 및 여가 공간	휴식 및 여가공간 최대확보	○	• 사업대상지내 주민을 위한 휴식 및 여 가공간 부족	• 썬치공원 등을 통한 휴식공간 조성	-	
10.보행친화 공간	주요가로 환경개선 (보차혼용도로)	○	• 급경사 및 협소한 폭으로 현행도로 내 불법적치물로 인한 통행 불편 가중	• 교통정문화, 포장·가로시설물 정비 등을 통한 보행환경 개선 • CCTV설치, 가로등 정비 등 범죄예방	-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 반영사항	비고
					환경설계 적용	
	11.폐기물	폐기물 발생 최소화	○	•공사시 폐기물 발생 예상	•공사시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처리	-
	12.소음,진동	소음환경기준이하	○	•향후 공사중 인근지역에 공사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발생 예상	•공사 시 저감대책 수립	-

10)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CPTED)

구분	계획내용	비고
자연적 감시	- 보행을 통한 자연감시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후 보안등 교체계획 수립 - 담장은 주변감시와 골목길의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투시형 또는 낮은 높이의 담장 설치를 권장함	-
영역성 강화	- 우범지역 및 저활용 공지 등에 지역주민을 위한 쉼지공간을 조성하여 영역성 강화 및 활용성 증대 - 통일성 있는 가로 시설물 디자인 계획을 통하여 마을의 영역성 강화	-
활동의 활성화	- 우범지대 및 통행이 적은 골목길에 화단을 조성하여 활성화 유도 -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한 주민공동체 프로그램 활성화	-
유지관리	- 정비되는 기반시설 등의 유지관리는 주민협의체(주민공동체 운영회)에서 주도적으로 관리	-
방법용 CCTV 설치	- 마을 내 주요 교차로 및 우범지역 등 범죄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감시의 효율성(가시범위, 주변 인지성 등)을 고려하여 CCTV 확충	-
커뮤니티시설 조성	- 지역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방범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	-

11) 주거환경관리를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부문	정비계획	개요	사업시행	비고
주민공동체 활성화방안	주민역량 강화	사례지 답사 및 교육 실시	지원조직 (서울시, 자치구, 전문가)	-
	공동체 활성화	지속적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를 통하여 마을 공동체 형성	주민협의체 및 지원조직	-
	공동체 프로그램	버들마을 비전/목표 실행을 위한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및 지속적인 발굴	주민협의체 및 지원조직	-
	주민공동체운영회 구성	조직구성 및 운영규약 작성	주민공동체 운영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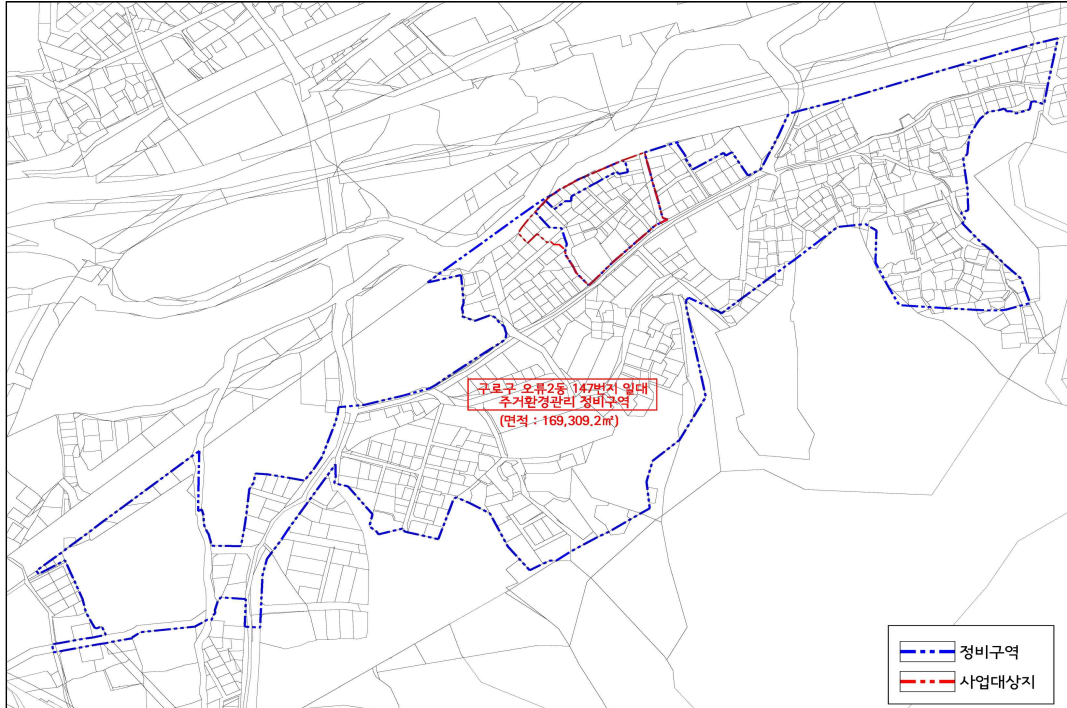
2. 관련도면 : 붙임참조

※ 첨부된 도면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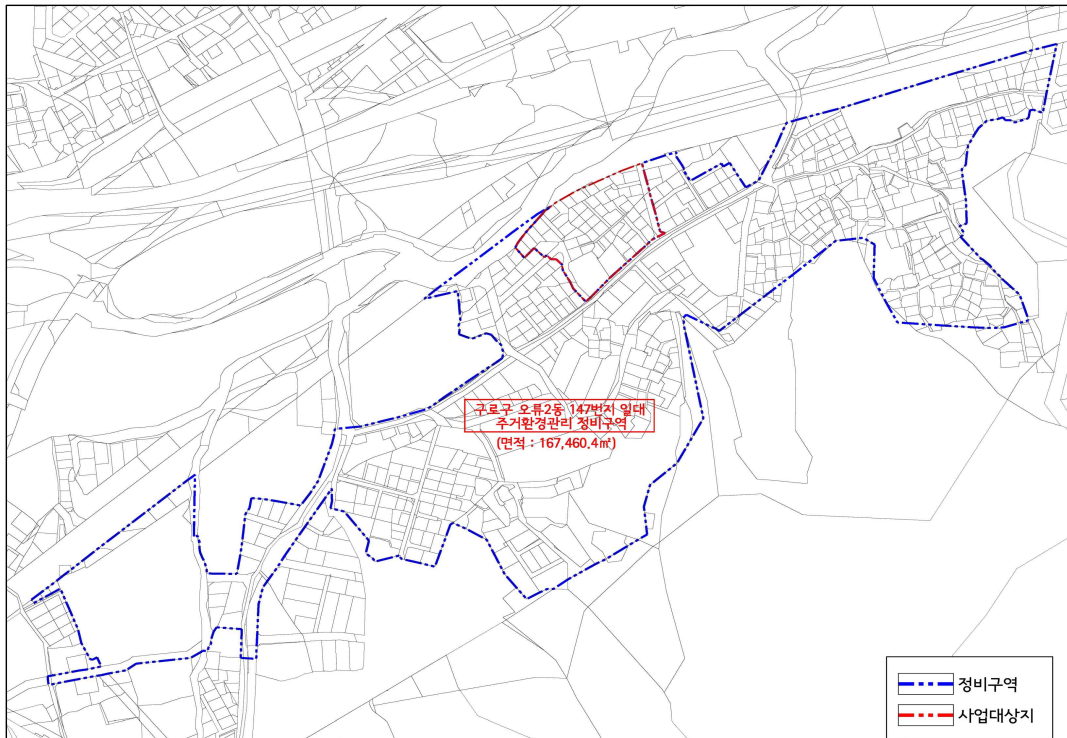
3.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시청 주거환경개선과(☎02-2133-7250), 구로구청 도시개발과(☎02-860-2517)에 관련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비계획구역 결정(기정)도



■ 정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2786호

도시계획시설사업(매현시민의숲 근린공원) 공사완료 공고

1. 매현시민의숲 근린공원은 건설부 고시 제146호(1987.4.27.)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31호(2023.1.26.)로 최종 조성계획결정(경미한변경)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58호(2023.2.23.)로 도시계획시설사업(매현시민의숲 근린공원)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한 「매현시민의숲 반려견놀이터 조성」 사업에 대하여
2.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공사가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장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6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명칭·사업내용

-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2) 사업의 명칭 : 매현시민의숲 반려견놀이터 조성
- 3) 사업내용 : 매현시민의숲 근린공원에 반려견놀이터를 설치

다. 사업의 면적 : 842.53㎡

라. 사업의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동물보호과)
-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마. 사업의 기간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바.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청 동물보호과 (☎ 02-2124-283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2789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공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등록 번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원)	모집 지역	모집기간
	대표자					사용기간
2023-14-2	손잡고	서울시 종로구 창신길 39-10	○ 노동인권 인식개선 문화 캠페인 및 교육	100 (현금 및 물품)	전국	2023.1.19. ~ 2023.12.31.
	박래군					2023.1.19. ~ 2023.12.31.
2022-135-1	재단법인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3, 8층	○ 국내 및 해외 개발 도상국 소외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	1,000 (현금 및 물품)	전국	2022.12.3. ~ 2023.12.2.
	정해원					2022.12.3. ~ 2024.12.2.
2023-64-1	사단법인 한국무궁화 재배관리연합회	서울시 서초구 도곡로 9길8	○ 나라꽃 무궁화 국기 게양대 주변 식재 및 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등	920 (현금 및 물품)	전국	2023.4.12. ~ 2024.4.9.

등 록 번 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원)	모집 지역	모집기간
	대표자					사용기간
	김윤식, 황선월					2023.4.12. ~ 2025.4.9.
2022-129-1	군인권센터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 14길 20 4층	○ 군 관련 인권침해,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 지원	100 (현금)	전국	2022.11.1. ~ 2023.10.31.
	임태훈					2022.11.1. ~ 2024.10.31.
2022-114-1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 11길 30	○ 국내외 시설 생활 거주 장애인, 어린이 등 취약 계층 구호 사업	600 (현금 및 물품)	전국	2022.9.1. ~ 2023.8.31.
	조준호					2022.9.1. ~ 2024.8.31.
2022-83-1	사단법인 세계여성 평화그룹	서울시 서초구 마방로4길 22, 2층	○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과 피난 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60 (현금)	전국	2022.5.27. ~ 2023.5.20.
	윤현숙					2022.5.27. ~ 2023.12.30.
2023-48-1	스마일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416 1519호 R46	○ 동물보호 활동(구조, 치료, 입양, 캠페인 등)	765 (현금 및 물품)	전국	2022.3.9. ~ 2024.3.8.

등 록 번 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원)	모집 지역	모집기간
	대표자					사용기간
	송명희					2022.3.9. ~ 2025.3.8.
2023-38-1	사회복지법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6층	○ 서울시 에너지 취약 계층 지원 ○ 틈새 위기가구, 저소득 취약계층 등 복지 필요 이웃 지원	130 (현금)	전국	2023.2.22. ~ 2024.1.31.
	김현훈					2023.2.22. ~ 2025.1.31.
2023-29-2	사회복지법인 한림화상재단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55, 6층	○ 화상경험자 회복 지원	200 (현금 및 물품)	전국	2023.2.10. ~ 2023.12.31.
	허준					2023.2.10. ~ 2024.12.31.
2023-10-1	사단법인 사랑의달팽이	서울시 중구 동호로 15길 27 종하빌딩 A동 1층	○ 청각장애인의 소리 찾기와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	369 (현금)	전국	2023.1.16. ~ 2023.12.31.
	김민자					2023.1.16. ~ 2025.1.15.
2022-168-2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서울시 성북구 개운사길 76-1 법인사무국	○ 시설거주 장애인들의 건강지원 및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장애바로알기 사업 ○ 근로장애인 및	200 (현금)	전국	2023.1.1. ~ 2023.12.31.

등 번 · 록 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원)	모집 지역	모집기간
	대표자					사용기간
	천원배		장애아동 지원 등			2023.1.1. ~ 2024.9.30.
2022- 131-1	재단법인 청년재단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35, 관정 빌딩 3층	○ 청년의 전인적 성장 및 사회 정착을 위한 청년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 청년의날 기념 및 청년층 인식제고를 위한 청년 문화행사 개최	800 (현금 및 물품)	전국	2022.11.19. ~ 2023.11.13.
	장예찬					2022.11.19. ~ 2024.11.13.
2023 -70-1	사단법인 유라시아 문화연대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58 4층	○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희생자 기림 시설 (보화종루) 보수 및 추모문화제 개최	125 (현금)	전국	2023.4.28. ~ 2024.4.27.
	신이영					2023.4.28. ~ 2025.4.27.
2022- 109-1	사단법인 한국이주여성 인권센터	서울시 종로구 종로65길 27-1 코콤빌딩 2층	○ 이주여성 인권 증진 및 자립지원 사업 ○ 이주 배경 아동 및 청소년 지원	100 (현금)	전국	2022.9.1. ~ 2023.8.31.
	허영숙					2022.9.1. ~ 2024.8.31.

등 록 번 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원)	모집 지역	모집기간
	대표자					사용기간
2022-62-3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서울시 성북구 개운사길 76-1 법인사무국	○ 시설거주 장애인들의 건강지원 및 장애 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장애바로알기 사업	133.5 (현금)	전국	2022.5.1. ~ 2022.12.31.
	천원배					2022.5.1. ~ 2024.2.29.
2022-115-1	재단법인 우리아이재단	서울시 마포구 양화진 4길 32 이토마토빌딩	○ 북한 어린이 급식 지원 사업	1,000 (현금 및 물품)	전국	2022.9.7. ~ 2023.8.31.
	김형식					2022.9.7. ~ 2024.8.31.
2022-129-2	군인권센터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14길 20, 4층	○ 군 관련 인권침해,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 지원	100 (현금)	전국	2022.11.1. ~ 2023.10.31.
	임태훈					2022.11.1. ~ 2024.10.31.
2020-101-2	사단법인 평화디딤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14 301호	○ 일본 북해도 일제 강제노동 자료관 재건 -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동 희생자 추도 및 유해 안치 장소 '광현사' 재건	100 (현금)	전국	2020.9.22. ~ 2022.9.21.
	정유성					2020.9.22. ~ 2024.9.21.

□ 기부금품 모집등록

등 록 번 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원)	모집 지역	모집기간
	대표자					사용기간
2023 -65	사단법인 원더스 인터내셔널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6길 19 4층	○ 해외 국제개발 협력 사업 ○ 국내외 혁신활동가 지원	80 (현금 및 물품)	전국	2023.4.21. ~ 2024.4.19.
	이성범					2023.4.21. ~ 2025.4.19.
2023 -66	사단법인 지구사랑환경 보호운동본부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23 506호	○ 환경보호 캠페인, 감시 활동, 교육 등의 활동	950 (현금)	전국	2023.4.21. ~ 2023.12.31.
	김동성					2023.4.21. ~ 2024.12.31.
2023 -67	대한위키프로젝트협회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349, 301호	○ 위키프로젝트의 연구 보급 및 육성 지원	100 (현금 및 물품)	전국	2023.5.1. ~ 2024.4.30.
	한상철					2023.5.1. ~ 2024.12.31.
2023 -68	사단법인 글로벌호프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273, 2층	○ 튀르키예 강진 긴급구호	400 (현금)	전국	2023.4.22. ~ 2023.12.31.
	조용중					2023.4.22. ~ 2024.12.31.

등 번 록 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원)	모집 지역	모집기간
	대표자					사용기간
2023 -69	재단법인 베스티안재단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382	소방관의 화재 진압 후 질환 예방을 위하여 소방세정티슈 지원	30 (현금)	전국	2023.4.22. ~ 2023.8.31.
	김경식					2023.4.22. ~ 2023.12.31.
2023 -71	사단법인 한국다문화 가족협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10 4층	다문화가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172 (현금 및 물품)	전국	2023.4.22. ~ 2023.12.31.
	남운성					2023.4.22. ~ 2023.12.31.
2023 -72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23-1 자유회관	국내외 소외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아동 · 청소년 지원	1,000 (현금 및 물품)	전국	2023.4.27. ~ 2023.12.31.
	임호영					2023.4.27. ~ 2025.4.23.
2023 -73	사단법인 한국제이티에스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51길 42	북한 및 국내외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사업	600 (현금)	전국	2023.4.27. ~ 2024.4.26.
	최석호					2023.4.27. ~ 2024.6.26.

등 록 번 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원)	모집 지역	모집기간
	대표자					사용기간
2023 -74	사회복지법인 씨제이나눔재단	서울시 중구 동호로330	○ 아동, 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30 (현금)	전국	2023.5.3. ~ 2023.5.31.
	이재현					2023.5.3. ~ 2023.12.31.
2023 -75	재단법인 청소년행복재단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163, 2층	○ 취약계층 고위기 청소년 발굴 및 지원	500 (현금)	전국	2023.5.3. ~ 2024.4.30.
	이중명					2023.5.3. ~ 2025.4.30.
2023 -76	사단법인 프로라이프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135, 4층	○ 낙태예방과 생명존중 의식함양을 위한 성가치 교육, 위기 임신상담, 미혼모 지원사업	100 (현금 및 물품)	전국	2023.5.3. ~ 2024.4.18.
	최아란					2023.5.3. ~ 2025.4.18.
2023 -77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35길 40 알파라운드 2,3층	○ 금융 취약계층 자활·자립을 위한 지원	242.3 (현금 및 물품)	전국	2023.5.11. ~ 2024.5.10.
	김용덕					2023.5.11. ~ 2025.5.10.

등 록 번 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원)	모집 지역	모집기간
	대표자					사용기간
2023 -78	사단법인 용산구의정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81길 14	○ 결식아동,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 대상 식품 지원	50 (현금)	전국	2023.5.7. ~ 2024.5.6.
	윤종철					2023.5.7. ~ 2024.5.6.
2023 -79	사단법인 한국YWCA 연합회	서울시 중구 명동길73 한국YWCA회관 4층	○ 청소년 · 청년 대상 교육 및 공익활동 지원	70 (현금 및 물품)	전국	2023.5.4. ~ 2023.12.31.
	원영희					2023.5.4. ~ 2024.3.31.
2023 -80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67 전법회관 6층	○ 국내외 소외계층 지원	300 (현금 및 물품)	전국	2023.5.27. ~ 2024.5.26.
	김전충					2023.5.27. ~ 2025.5.26.
2023 -81	사단법인 한반도인권과 통일을위한 변호사모임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4 2 동진빌딩 6층	○ 법치주의 구현, 북한의 인권 개선과 성공적인 통일을 위한 사업	500 (현금)	전국	2023.5.22. ~ 2024.5.21.
	이재원					2023.5.22. ~ 2025.5.21.

등 번 로 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원)	모집 지역	모집기간
	대표자					사용기간
2023 -82	민간공공외교단체 세계평화위원회 한국협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320호	○ 미얀마, 우크라이나 긴급구호금품 지원 ○ 세계 평화와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	1,000 (현금 및 물품)	전국	2023.5.19. ~ 2024.5.18.
	강요셉					2023.5.19. ~ 2024.5.18.
2023 -83	사단법인 푸른나눔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43, 4층	○ 국내 저소득 및 복지 사각지대 가정 지원	900 (현금 및 물품)	전국	2023.6.3. ~ 2024.5.31.
	문희곤					2023.6.3. ~ 2025.5.31.
2023 -84	재단법인 옥스팜코리아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9길 16 301호	○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주민 및 난민 지원	1,000 (현금)	전국	2023.6.3. ~ 2024.3.31.
	자넷 올드필드					2023.5.3. ~ 2025.3.31.
2023 -85	국제기후종교 시민네트워크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68 동신빌딩 5층	○ 지진 피해를 입은 시리아 현지 주민 지원	100 (현금)	전국	2023.6.3. ~ 2023.7.31.
	김종화					2023.6.3. ~ 2023.10.31.

등 록 번 호	모 집 자	소 재 지	모 집 목 적	목 표 액 (백만원)	모 집 지 역	모 집 기 간
	대 표 자					사 용 기 간
2023 -86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장애인 복지시설협회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 복지타운 703호	○ 서울시 장애인 권익 증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28 (현금)	전국	2023.6.3. ~ 2023.12.31.
	허곤					2023.6.3. ~ 2024.1.31.
2023 -87	사단법인 평화의숲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306호	○ 국내외 숲 조성, 환경·동식물 보호를 위한 지원	300 (현금 및 물품)	전국	2023.6.16. ~ 2024.4.4.
	류영재					2023.6.16. ~ 2025.4.4.
2023 -88	재단법인 피스원즈코리아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90길 11, 업무동 11층	○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지원 ○ 튀르키예 지진 피해 이재민 지원 ○ 필리핀 빈곤지역 지원	900 (현금)	전국	2023.6.16. ~ 2024.6.15.
	정석윤					2023.6.16. ~ 2025.6.15.
2023 -89	재단법인 아름다운재단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 6	○ 유해물질 없는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한 실태 조사, 캠페인 등	900 (현금 및 물품)	전국	2023.6.16. ~ 2024.6.14.
	한찬희					2023.6.16. ~ 2025.6.14.

등 번 록 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원)	모집 지역	모집기간
	대표자					사용기간
2023 -90	국제기후종교 시민네트워크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68 동신빌딩 5층	아시아 기후 위기 대응 및 생태 보전을 위한 시민 사회 역량 강화 사업	48 (현금)	전국	2023.6.16. ~ 2024.6.5.
	김종화					2023.6.16. ~ 2025.6.5.
2023 -91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272 삼보빌딩 5층	국내외 아동 및 청소년, 청년 지원 사업	200 (현금)	전국	2023.7.1. ~ 2023.12.31.
	이훈규					2023.7.1. ~ 2024.12.31.
2023 -92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86길 21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990 (현금)	전국	2023.7.1. ~ 2023.12.31.
	윤기원					2023.7.1. ~ 2024.12.31.
2023 -93	사단법인 평화삼천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35-3, 201호	- 베트남 빈민지역 '사랑의 집' 및 '희망의 다리' 건축 지원 - 해외 빈민 지역 긴급 지원 - 대북 주민 인도 지원 (사업 진행 가능시)	251.5 (현금)	전국	2023.6.24. ~ 2023.12.31.
	곽동철					2023.6.24. ~ 2025.6.14.

등 록 번 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원)	모집 지역	모집기간
	대표자					사용기간
2023-94	재단법인 한국기증자 유가족지원본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9길 28	○ 장기기증자 유가족 지원 사업	50 (현금 및 물품)	전국	2023.7.1. ~ 2024.6.30.
	김항식					2023.7.1. ~ 2025.6.30.
2023-95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실로암 시각장애인복지회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17	○ 시각장애인의 의료적 개안수술 지원	330 (현금)	전국	2023.7.1. ~ 2024.6.30.
	김선태					2023.7.1. ~ 2024.8.31.
2023-96	사단법인 지평법정책연구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14 그랜드센트럴 A동 26층	○ 법정책 연구 및 교육 등을 통해 법정책 발전 및 사회 발전에 기여	50 (현금)	전국	2023.7.1. ~ 2024.5.31.
	이공현					2023.7.1. ~ 2025.5.31.
2023-97	사단법인 한국조혈모 세포은행협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02길 17 2층	○ 조혈모세포 기증 인식 개선 및 활성화 사업	33 (현금 및 물품)	전국	2023.7.15. ~ 2023.12.31.
	신희영					2023.7.15. ~ 2023.12.31.
2023-98	사단법인 환경실천연합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43 2층	○ 환경 관련 연구 및 환경 인식 증진을 위한 캠페인	1,000 (현금)	전국	2023.7.15. ~ 2024.6.25.
	이경울					2023.7.15. ~ 2025.6.25.

등 록 번 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원)	모집 지역	모집기간
	대표자					사용기간
2023 -99	이춘근 국제정치 아카데미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35길, 401호	일반시민들의 국제 정세 인식 제고를 위한 무상강의 제작, 세미나 및 특강 등 개최	20 (현금)	전국	2023.7.15. ~ 2024.7.13.
	이춘근					2023.7.15. ~ 2024.7.31.
2023 -100	사단법인 빅이슈코리아	서울시 성동구 뚝섬로 1나길 5 헤이그라운드 G306	국내 홈리스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 복지 지원, 홈리스 인식 개선 사업 등	900 (현금 및 물품)	전국	2023.7.15. ~ 2023.12.31.
	김수열					2023.7.15. ~ 2024.12.31.
2023 -101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 복지관협회	서울시 마포구 만리재로14 한국사회 복지회관 710호	저소득층 및 지역 사회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금 마련(카카오 같이 가치 협력 사업)	1,000 (현금)	전국	2023.7.20. ~ 2024.7.12.
	정성기					2023.7.20. ~ 2024.12.31.
2023 -102	사단법인 나누며하나되기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461 102동 309호	- 북한 이탈주민 국내 정착 지원 - 취약계층 및 국내 거주 재외국민 근로자 지원 - 국내외 재난 지원	750 (현금 및 물품)	전국	2023.7.28. ~ 2024.6.30.
	이중호					2023.7.28. ~ 2024.12.31.
2023 -103	재단법인 방재문화진흥원	서울시 동대문구 하정로36 광진빌딩 205호	자연재난 관련 자원 봉사단체 지원을 통한 자원봉사 인력 양성 및 안전문화 확산 도모	197 (현금 및 물품)	전국	2023.8.1. ~ 2024.7.31.
	권욱					2023.8.1. ~ 2025.7.31.

등 록 번 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원)	모집 지역	모집기간
	대표자					사용기간
2023 -104	김동훈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 추모 전시 및 공연 등을 통한 만화계의 건강한 작업 환경 개선 추구	50 (현금)	전국	2023.7.28. ~ 2024.7.27.
						2023.7.28. ~ 2024.12.31.
2023 -105	재단법인 국제구조위원회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432 타워432빌딩 13층	전세계 난민과 실향민에 대한 지원 및 인식개선 사업	340 (현금)	전국	2023.8.1. ~ 2024.7.31.
	이은영					2023.8.1. ~ 2024.12.31.
2023 -106	사단법인 코인트리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428 500-30호	해외 빈민지역 아동 및 주민 대상 지원, 긴급구호 등의 사업	99 (현금 및 물품)	전국	2023.8.2. ~ 2024.8.1.
	한영준					2023.8.2. ~ 2025.8.1.
2023 -107	사단법인 글로벌케어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8 1차 302호	자연재해 등으로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처한 국내외 주민 대상 긴급구호	1,000 (현금 및 물품)	전국	2023.8.19. ~ 2024.7.31.
	박용준					2023.8.19. ~ 2025.7.31.
2023 -108	사단법인 두루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14 그랜드 센트럴 A동 21층	사회정의의 및 공익을 위한 공익소송, 법률 자문, 상담 등 공익 법률 지원 사업	100 (현금)	전국	2023.9.1. ~ 2024.8.31.

등 록 번 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원)	모집 지역	모집기간
	대표자					사용기간
	김지형					2023.9.1. ~ 2025.8.31.
2023 -109	사단법인 한국자연 재난협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길 93	조형미술 전시를 통해 기후변화, 재난안전, 환경변화를 부각시켜 지구환경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실천 유도	40 (현금 및 물품)	전국	2023.8.23. ~ 2023.12.31.
	전병성					2023.8.23. ~ 2023.12.31.
2023 -110	사단법인 한국이주여성 인권센터	서울시 종로구 종로65길 27-1 코콤빌딩 2층	이주여성 인권증진 및 이주배경 아동 지원	100 (현금)	전국	2023.9.1. ~ 2024.8.31.
	허영숙					2023.9.1. ~ 2025.8.31.
2023 -111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	서울시 용산구 독서당로46 한남아이파크 에비뉴 B1	국내 결식우려 이웃 지원 및 식생활 환경 개선 활동	500 (현금 및 물품)	전국	2023.9.2. ~ 2023.12.31.
	최강종					2023.9.2. ~ 2024.12.31.
2023 -112	청년문간 사회적협동조합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102-5, 1층	청년밥상 문간사업, 청년문화 지원사업	99 (현금 및 물품)	전국	2023.9.6. ~ 2024.9.5.

등 번 록 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원)	모집 지역	모집기간
	대표자					사용기간
	이문수					2023.9.6. ~ 2025.9.5.
2023 -113	재단법인 한국소방복지재단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20가길 12, 301호	○ 소방관계인의 복리 증진 및 권익신장을 위한 사업	1,000 (현금 및 물품)	전국	2023.9.16. ~ 2024.9.14.
	김인울					2023.9.16. ~ 2025.9.14.
2023 -114	재단법인 한국취약노인 지원재단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가길 14 4층	○ 취약노인 보호 지원 사업	1,000 (현금 및 물품)	전국	2023.9.18. ~ 2023.10.20.
	서경석					2023.9.18. ~ 2025.9.17.
2023 -115	군인권센터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 14길 20 4층	○ 경북 예천 내성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급류 사고 생존자의 법률 및 의료비용 지원	100 (현금)	전국	2023.9.16. ~ 2024.8.31.
	임태훈					2023.9.16. ~ 2025.8.31.
2023 -116	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45 6층 임호빌딩	○ 세월호 참사 10주기 전국 및 해외 추모 사업	500 (현금 및 물품)	전국	2023.9.16. ~ 2024.9.12.

등 번 록 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원)	모집 지역	모집기간
	대표자					사용기간
	김종기					2023.9.16. ~ 2025.9.12.
2023 -117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 18길 10 연안회관 빌딩 5층	○ 건전한 성윤리 함양을 위한 교육, 문화, 법 등 바로 세우기 운동	300 (현금 및 물품)	전국	2023.9.21. ~ 2024.8.31.
	유만석					2023.9.21. ~ 2025.8.31.
2023 -118	서울동물학대 방지연합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8길 32 대양빌딩 2층 207호	○ 동물보호 사업 (유기 동물 구조 및 치료, 보호소 시설 운영, 동물보호 캠페인 등)	600 (현금 및 물품)	전국	2023.9.21. ~ 2024.9.20.
	장병권					2023.9.21. ~ 2024.12.31.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협력과(☎02-2133-632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2792호

도시관리계획(서울 연신내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 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81호(2021.12.31.)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된 서울 연신내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기관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02-2133-7077),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심복합사업2부(02-6006-0826)

다. 열람내용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 3)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연신내 지구단위계획구역	불광동 311번지 일대 대조동 185번지 일대 갈현동 396번지 일대	166,010	감)8,247	157,76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255호 (2002.7.2.)
신설	서울 연신내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319-1번지 일원	-	증)8,247	8,247	-

-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변경)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변경) : 생략 (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 6)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라. 열람도서 : 도시관리계획(서울 연신내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마. 기타사항

- 세부내용, 도면 등의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열람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서울시 홈페이지 → 서울소식 → 공고 →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에서도 확인가능
-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열람내용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02-2133-70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2799호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승인 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경미한 사항)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장

1. 승인일자: 2023. 9. 25.

2. 관리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주요내용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시 설 명 (사업시행자)	위 치	토지형질변경 면적(㎡)			건축 연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기 정	변 경	증 감	
삼육대학교 (학교법인삼육학원)	서울 노원구 공릉동 26-21 일대	173,141	173,141	-	114,358.49	143,436.25	29,077.76	

3.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여가정책과(02-2133-2015)

노원구 푸른도시과(02-2116-0562)

4. 열람기간: 시보게재 다음일로부터 14일간

5. 관계도서: 게재생략

서울특별시교육청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3-291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개정 이유

- 위원회의 통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성화중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여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위원회 목적, 정의, 지정 신청(안 제1조, 제2조, 제3조)
-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직무, 임기(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 위원 결격사유, 위촉 해지(안 제8조, 제9조)
- 위원회 회의, 수당 등, 간사(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 서면·조사 요구, 운영성과 평가, 운영세칙(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교육청 (담당부서: 학교지원과)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신문로 2가)
- 연락처: 전화 02-3999-605, FAX 02-6973-9944
- 이메일: y4888@sen.go.kr

4. 입법 예고문(안) - 붙임자료 참고

※ 이 규칙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 [행정정보 - 공지 사항]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위임된”을 “위임된 특성화중학교 및”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성”을 “운영성”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특성화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지정 신청) ① 특성화중학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학교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교예정인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신청서를 작성한다.
 ②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학교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교육부훈령) 제3조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기간 연장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5조(중전의 제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교육청 특목고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한다.

제10조(중전의 제8조) 제2항 본문 중 “7일전”을 “7일 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중전의 제11조) 중 “특목고”를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로, “현장”을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장에게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면담을 요청하고 현장”으로 한다.

제14조(중전의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특목고의 운영성과 평가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교육부훈령) 제13조에 따라 실시하되,”를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로 한다.

① 특성화중학교의 학교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5년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운영 성과가 포함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성화중학교의 자체평가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며, 특성화중학교의 운영 성과는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하되, 미흡하다고 평가받은 경우에는 특별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성과 평가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교육부훈령) 제13조에 따라 실시한다.

제15조(중전의 제13조) 중 “특목고의 지정 및 운영”을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운영”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성화중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별표 1] 계열별 지정·운영 부서

특수목적고등학교 계열별 지정·운영 부서

구 분	지정·지정 취소	운영·평가
과학계열 고등학교	학교지원과	디지털· 혁신미래교육과
외국어계열 고등학교	학교지원과	교수학습· 기초학력지원과
국제계열 고등학교	학교지원과	교수학습· 기초학력지원과
예술계열 고등학교	학교지원과	중등교육과
체육계열 고등학교	학교지원과	체육건강예술포육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진로직업교육과	진로직업교육과

특성화중학교 계열별 지정·운영 부서

계열	지정·지정취소	운영·평가
국제중학교	학교지원과	중등교육과
체육중학교	학교지원과	체육건강예술포육과

■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특성화중학교 지정 신청 요약서(제3조 관련)

특 성 화 중 학 교 지 정 신 청 요 약 서									
대상학교		학교명칭	중학교 (한자)						
		학교위치	(우) (주 소)					남녀 공학 여부	남/여/공학
신청인	공·사 사립	교 장	성명		생 년 월 일		성별		
		연 락 처	(주간) (핸드폰)						
	사립	법 인 명	학교법인 학원 (한자)						
		소 재 지	(우) (주 소)						
		대 표 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 락 처	(주간) (야간)						
신청 내용	학교 규모 계획 (향후 5개년)	학년도별	학급수	학생 정원			비고		
				1학년	2학년	3학년			
	개 교 일		년 월 일 (※ 신설학교의 경우 개교예정일 작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특성화중학교 지정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제출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정 취소 등 이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붙임 자료 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4. 교(직)원 배치에 관한 계획 5. 기타									

(붙임 1) 학교 운영에 관한 계획

1. 특성화중학교 지정 신청 취지

- 지정 신청의 취지, 목적 및 발전계획 등을 명시
- 학교 구성원의 의지 기술
 - ※ 증빙자료 : 학교운영위원회·교직원회의 회의록 등
- 기타

2. 재정운영 현황 및 지자체 재정지원 계획

2-1. 학교 회계 현황(공립)

(단위 : 천원)

세입 예산		세출 예산	
항목	예산액	정책사업	예산액
국고보조금		인적자원 운용	
비법정이전수입		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기본적 교육활동	
학교회계간이전수입		선택적 교육활동	
민간이전수입		교육활동 지원	
등록금		학교 일반운영	
수익자부담수입		학교시설 확충	
학부모부담지원금수입		학교 재무활동	
사용료및수수료			
자산수입			
적립금처분수입			
보증금회수			
기타행정활동수입			
순세계잉여금			
보조금사용잔액			
이월금			
계		계	

※ 증빙서류 : 학교회계 예·결산서 등

2-2. 학교회계 세입현황 및 계획(사립, 지정 이전 5년간)

(단위 : 천원)

학년도	학교비 회계 세입 총액					등록금대 법인전입금 비율(A:B)
	등록금(A)	법인전입금(B)	재정결함 보조금	기타	계	
평균						

2-3. 학교회계 현황(사립, 지정 이전 5년간)

(단위 : 천원)

<0000학년도>

세입예산				세 출 예산		
관	항	목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예산액
중앙정부이전수입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인적자원 운용	교원보수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비법정이전수입	광역지방자치단체전입금			직원보수	
		기초자치단체전입금			교직원기타보수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사립학교보조금수입			교직원복지및역량강화	
기타이전수입	사학법인이전수입	법인법정부담금		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급식관리	
		법인이전수입			기숙사관리	
	학교회계간이전수입	다른학교회계전입금			보건관리	
		기타학교회계전입금			교육격차해소	
학부모부담수입	등록금	민간이전수입	기타지원금		학생장학지원	
		입학금			기타학생복지서비스	
		수업료		기본적교육활동	교과활동	
	수익자부담수입	학교운영지원비			창의적체험활동	
		급식비		선택적교육활동	방과후학교운영	
		방과후학교활동비			평생교육	
		현장체험학습비			직업교육	

세입예산				세출예산		
관	항	목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예산액
지원금수입		청소년단체활동비			국제교육	
		졸업앨범대금			독서활동	
		교과서대금			교기육성	
		기숙사비			기타선택적교육활동	
		기타수익자부담수입		교육활동지원	교무업무운영	
	학부모부담지원금수입	급식지원금수입			생활지도운영	
		방과후학교활동지원금수입			연구학교운영	
		기타학부모부담지원금수입			학습지원실운영	
		입학금지원금수입			교육여건개선	
		수업료지원금수입		학교일반운영	부서기본운영	
		학교운영지원비지원금수입			시설장비유지	
		현장체험학습지원금수입			일반행정관리	
		청소년단체활동지원금수입			학교운영협력	
		졸업앨범대금지원금수입			학부모지원	
		교과서대금지원금수입		학교시설확충	시설확충및개선	
행정활동수입	사용료및수수료	사용료및수수료		학교재무활동	반환금	
		자산매각대		계	예비비	
	자산수입	자산매각대				
	적립금처분수입	적립금처분수입				
	보증금회수	보증금회수				
	기타행정활동수입	지난년도수입				
		이자수입				
		기타행정활동수입				
전년도이월금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보조금사용잔액	보조금사용잔액				
	이월금	이월사업비				
계						

2-4. 학생 1인당 수업료 및 입학금 책정 계획(지정이전년도/지정 이후 5년간)

(단위 : 천원)

학년도	수업료(A)	입학금(B)	소계(C=A+B)	학교운영지원비(D)	합계(E=C+D)

2-5. 학생 1인당 수익자부담경비 책정계획(지정이전년도/지정 이후 5년간)

(단위 : 천원)

학년도	특기적성 교육비	학교급식비	현장학습비	학생수련비	기숙사비	기타	합계

3. 교육시설 여건 및 개선계획

3-1. 기본 시설

학교명	교지 면적	체육장 면적	총면적
	() m ²	() m ²	() m ²

3-2. 신청대상학교의 규모 및 기본여건(최근 3년/지정 이후 5년)

해당학년도	1학년				2학년				3학년				합계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학생	학생			학생	학생			학생	학생					

3-3. 교사 시설

구분		수	구분		수	구분		수
관리실 ()실	교장실		교과교실 ()실	기술·가사실		지원실 ()실	방송실	
	교무지원실			음악실			교재실	
	행정지원실			미술실			보건실	
	학운위원회의실		특별교실 ()실	시청각실		학생 복지및 부속실 ()실	서고	
	교사연구실			사이버교실			식당	
	교사휴게실			도서정보실			샤워탈의실	
	숙직실			어학실			학생탈의실	
교과교실	보통교실			토론학습실			학생화장실	
	수준별교실			강당(자율관)			교직원화장실	
	홈베이스		지원실	진로상담실			장애우화장실	
	과학탐구실			정보처리실			기계실	
	수학실			문서인쇄실			기숙사동	

※ 기타 특별교실 현황은 학교별 작성시 수정 가능

4. 최근 5년간 학교운영성과

- 최근 5년간 학교운영성과
 -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학업성취도 증가, 부진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 등 사학의 교육역량과 교육개선 내용 기술
 - ※ 언론보도, 교육부·교육청 수상실적 등 “표”로 작성하여 기재
(관련자료 별도 첨부)
- 지역사회와의 협조체제 등 기타 학교 운영 성과

(붙임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1. 교육과정 편성·운영계획(지정이전/이후 5년간)
2. 교육과정 특성화·다양화 계획
3. 창의·인성 교육 계획
4. 진학 및 진로지도 계획
5.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및 지도 계획

(붙임 3)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1. 입학전형 실시 계획
2. 사회통합전형 대상 학생의 모집 및 입학 전형 방법
3. 입학전형 영향평가 실시 계획

(붙임 4) 교직원 배치에 관한 계획

1. 교직원 현황

1-1. 직급별 교원현황(※ 신설학교의 경우, 신설계획(확보계획)에 따라 작성)

(0000.00.00. 현재)

구분		교 원				사무직원			계
		교장	교감	교사	소계	일반직	기능직	소계	
정규	남				명				
	여								
기간제	남								
	여								
강 사	남								
	여								
총계									
※ 별첨: 교사는 교과별/학년별 정규·기간제·강사 현황 제출									

1-2. 교과별 교원현황

(0000.00.00. 현재)

		교장	교감	윤리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음악	미술	외국어		한문	가정	기술	체육	보건	영양	기타	계
											영어	제2 외국어								
정원																				
현원	남																			
	여																			
	계																			

1-3. 교육경력별 교원 현황

(0000.00.00. 현재)

구분	6년미만	6-10년	11-15년	16-20년	21-25년	26-30년	31년 이상	계	비고
남									평균 경력 ()년, 석사()명, 박사()명
여									
계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u>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성과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목고”라 한다)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u>서울특별시교육청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u> 제1조(목적) ----- ----- 위임된 특성화중학교 및 ----- ----- 운영성 ----- ----- ----- -----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성화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지정 신청) ① 특성화중학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학교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교예정인 공립 학교의 경우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신청서를 작성한다. ②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학교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현행	개정안
<신설> 제3조(구성)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특목고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한다. ②·③ (생략) 제4조 ~ 제7조 (생략) 제8조(회의) ① (생략)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교육부훈령) 제3조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기간 연장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 ~ 제9조 (현행 제4조부터 제7조까지와 같음) 제10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7 일 전-----

현행	개정안
한다.	-----.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제10조 (생략)	제11조·제12조 (현행 제9조 및 제10조와 같음)
제11조(서면·조사 요구) 위원회는 <u>특목고</u> 지정·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u>현장</u> 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3조(서면·조사 요구) -----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장에게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면담을 요청하고 현장 ----.
제12조(운영성과 평가) <신설>	제14조(운영성과 평가) ① 특성화중학교의 학교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5년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운영 성과가 포함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② 특성화중학교의 자체평가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며, 특성화중학교의 운영 성과는 ‘우수’, ‘보통’, ‘미흡’ 으로 평가하되, 미흡하다고 평가받은 경우에는 특별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③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성과 평가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교육부훈령) 제13조에 따라 실시한다.
특목고의 운영성과 평가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교육부훈령) 제13조에 따라 실시하되, 운영성과 평가	④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

현행	개정안
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 ----- -.
<u>제13조(운영세칙)</u>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u>특목고의 지정 및 운영</u>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u>제15조(운영세칙)</u> ----- ----- <u>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운영</u> ----- -----.

[입법예고 의견제출 서식]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

성 명 : (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 : 대표자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개정안	수정요구안	사 유
제0조(00)	제0조(00)	○ —

2023년 월 일

구 고 시

◆ 중구고시 제2023-55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10호(2016.10.06.)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1-103호(2021.09.01.)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2023.08.16.)된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0,12지구 내 을지로3가 65-8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3년 10월 5일

중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65-8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 2) 사업의 명칭 : 을지로3가구역 제10,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조성사업

다. 사업면적 및 규모

- 면 적 : 736.5㎡
- 규 모 : 지하1층/지상11층, 연면적 4,466.77㎡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1) 을지로75피에프브이 주식회사
2) 을지로95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주 소 : 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 87번길 18,
비동 4층 엠피스광고센터 447호(영덕동, 이시티빌딩)
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191,
8층 씨8788호 (중동, 씨티프라자)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7개월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붙임

사.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중구 도심정비과 ☎ 02-3396-5772)에 비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번호	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외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중구 을지로3가	65-6	대지	165.3㎡	45.0㎡	교보자산신탁 (주)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465		
2	중구 을지로3가	65-7	대지	183.1㎡	118.3㎡	교보자산신탁 (주)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465		
						국 (기획재정부)			
3	중구 을지로3가	65-8	대지	303.5㎡	245.0㎡	교보자산신탁 (주)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465		
4	중구 을지로3가	65-9	대지	93.2㎡	49.2㎡	교보자산신탁 (주)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465		
5	중구 을지로3가	65-10	대지	118.7㎡	118.7㎡	교보자산신탁 (주)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465		
6	중구 을지로3가	65-11	대지	111.7㎡	37.5㎡	교보자산신탁 (주)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465		
7	중구 을지로3가	65-12	대지	163.6㎡	26.3㎡	교보자산신탁 (주)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465		
8	중구 을지로3가	65-24	대지	96.5㎡	96.5㎡	교보자산신탁 (주)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465		
합 계				1,235.6㎡	736.5㎡	-	-	-	-

구 공 고

◆ 구로구공고 제2023-1826호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폐지)(안) 열람공고

구로구 오류동 47-1(삼익쇼핑)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폐지)(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5일

구로구청장

1.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폐지)(안) 조서 및 사유서

가.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폐지)(안)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시장	-	구로구 오류동 47-1번지	3,167	감) 3,167	-	서고시 제1986-681호 ('86.9.20.)	삼익쇼핑센터

나.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폐지)(안)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시장 (삼익쇼핑센터)	시장 폐지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시장기능 상실에 대응하고, 역세권에 위치한 대상지의 효율적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도시계획시설(시장) 폐지

2. 관련도면 : 게재생략(구로구청 도시계획과, 지역경제과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3.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 공고일 익일부터 14일간

4. 열람 및 의견제출장소 : 구로구청 도시계획과(☎860-2944), 지역경제과(☎860-2858)

◆ 동작구공고 제2023-1599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작성을 위한 열람(안)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259호(2017.07.13.)로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결정(변경)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2-167호(2022.11.17.)로 실시계획(변경)작성 고시된 동작구 복합청사건립 및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변경)작성을 실시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를 합니다.
3. 본 열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송달 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본 열람공고로 갈음합니다.

2023년 10월 5일

동작구청장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지정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75-2번지 외 115필지
 └ 변경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75-2번지 외 126필지(분할)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광장) 사업 (변경없음)
- 명 칭: 동작구 복합청사건립 및 진입도로 등 개설사업 (변경없음)

다. 사업규모 (변경없음)

1단계	1) 공공청사: 부지면적 14,025.5㎡, 건축규모 지하3층/지상10층, 연면적 44,671.88㎡ 2) 도 로: 중로 1-320 (폭 21m, 연장 35m) 중로 1-184 (폭 20~25m, 연장 85m) 소로 3-270 (폭 7~9m, 연장 172m) 3) 광 장: 교통광장 28㎡
2단계	4) 도 로: 중로 2- (폭 15m, 연장 15m) 대로 3-184 (폭 25~28m, 연장 125m (일부편입)) 5) 광 장: 근린광장 288㎡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성 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2동 47-2)

- 사업시행대행자

- 성 명 : ┐ 지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지정 :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2023. 10. 27일까지

 └ 변경 :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2024. 8. 31일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지반·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참조

사.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아. 열람장소 :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0길 42, 3층 신청사이전추진단(동작문화복지센터)
(☎ 02-820-2865, 2863)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명 : 동작구 복합청사건립 및 진입도로 등 개설사업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사항		
1~52		기정조서: 변경없음										
(기정)	53	동작구 상도동	373-113	대	7	7	정○조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01, 1002호 (가락동, 동부썬빌)				
(변경)	53	"	373-113	대	7	7	동작구					
54~55		기정조서: 변경없음										
(기정)	56	"	373-109	대	8	8	동작구					
(변경)	56	"	373-109	대	8	8	박○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로82, 100동 1600호(건건동, 영무예다움)				오기정정
57~100		기정조서: 변경없음										
(기정)	101	"	373-4	도	20	5	건설부					
(변경)	101	"	373-117	도	5	5	동작구					토지분할
(기정)	102	"	373-45	대	63	63	정○암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화평길 20				
							조○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로82, 100동 1600호(건건동, 영무예다움)				
(변경)	102	"	373-45	대	13	13	동작구					
							박○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로82, 100동 1600호(건건동, 영무예다움)				
	117	"	373-122	대	50	50	동작구				토지분할	
							박○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로82, 100동 1600호(건건동, 영무예다움)				
(기정)	103	"	373-75	대	22	22	조○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로82, 100동 1600호(건건동, 영무예다움)				
(변경)	103	"	373-75	대	22	22	박○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로82, 100동 1600호(건건동, 영무예다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사항	
(기정)	104	"	373-74	대	26	26	이○하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44가길15, ○동20○호(상계동,신한신빌라)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84 (을지로2가)	근저당권	
(변경)	104	"	373-74	대	13	13	이○하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44가길15, ○동20○호(상계동,신한신빌라)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84 (을지로2가)	근저당권	
	118	"	373-125	대	13	13	이○하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44가길15, ○동20○호(상계동,신한신빌라)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84 (을지로2가)	근저당권	토지분할
(기정)	105	"	373-31	대	33	33	김○희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161번길 18-1○(청라동)				
(변경)	105	"	373-31	대	27	27	김○희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161번길 18-1○(청라동)				
	119	"	373-118	대	6	6	김○희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161번길 18-1○(청라동)				토지분할
(기정)	106	"	373-33	대	88	88	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80, 80○동 170○호(신정동,목동신사가자아파 트)				
							정○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 110, 50○동 130○호(신봉동,신봉마을엘지빌리 지5차)				
							정○규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로 10, 50○동 160○호(천왕동, 천왕이펜하우스5단지)				
(변경)	106	"	373-33	대	1	1	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80, 80○동 170○호(신정동,목동신사가자아파 트)				
							정○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 110, 50○동 130○호(신봉동,신봉마을엘지빌리 지5차)				
							정○규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로 10, 50○동 160○호(천왕동, 천왕이펜하우스5단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사항	
120	"	373-121	대	87	87	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80, 80○동 170○호(신정동, 목동신시가자아파트)				토지분할
						정○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 110, 50○동 130○호(신봉동, 신봉마을엘지빌리지5차)				
						정○규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로 10, 50○동 160○호(천왕동, 천왕이편하우스5단지)				
(기정)	107	"	대	13	13	고○옥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44길 47, 20○동30○호(대방동, 대방2단지주 공아파트)				
						이○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195, 80○동 40○호 (마두동, 강촌마을)				
						고○수	서울특별시 동작구 만양로 84, 10○동 40○호(노량진동, 삼익아파트)				
						고○진	서울특별시시 영등포구 선유로9나길 5, 10○호 150○호(문래동5가, 문래동모아미래 도아파트)				
(변경)	107	"	대	13	13	고○옥	서울특별시 동작구 만양로 84, 10○동 40○호(노량진동, 삼익아파트)				
						이○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195, 80○동 40○호 (마두동, 강촌마을)				
						고○수	서울특별시 동작구 만양로 84, 10○동 40○호(노량진동, 삼익아파트)				
						동작구					
(기정)	108	"	대	30	30	고○옥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44길 47, 20○동30○호(대방동, 대방2단지주 공아파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사항	
						이○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195, 800동 400호 (마두동, 강촌마을)				
						고○수	서울특별시 동작구 만양로 84, 100동 400호(노량진동,삼익아파트)				
						고○진	서울특별시시 영등포구 선유로9나길 5, 100호 1500호(문래동5가,문래동모아미래도아파트)				
(변경)	108	"	373-32 대	2	2	고○욱	서울특별시 동작구 만양로 84, 100동 400호(노량진동,삼익아파트)				
						이○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195, 800동 400호 (마두동, 강촌마을)				
						고○수	서울특별시 동작구 만양로 84, 100동 400호(노량진동,삼익아파트)				
						동작구					
	121	"	373-119 대	26	26	고○욱	서울특별시 동작구 만양로 84, 100동 400호(노량진동,삼익아파트)				토지분할
						이○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195, 800동 400호 (마두동, 강촌마을)				
						고○수	서울특별시 동작구 만양로 84, 100동 400호(노량진동,삼익아파트)				
						동작구					
	122	"	373-120 대	2	2	고○욱	서울특별시 동작구 만양로 84, 100동 400호(노량진동,삼익아파트)				토지분할
						이○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195, 800동 400호 (마두동, 강촌마을)				
						고○수	서울특별시 동작구 만양로 84, 100동 400호(노량진동,삼익아파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사항	
						동작구					
(기정)	109	"	373-77	대	17	고○옥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44길 47, 200동300호(대방동,대방2단지주공아파트)				
						이○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195, 800동 400호 (마두동, 강촌마을)				
						고○수	서울특별시 동작구 만양로 84, 100동 400호(노량진동,삼익아파트)				
						고○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9나길 5, 100호 1500호(문래동5가,문래동모아미래도아파트)				
(변경)	109	"	373-77	대	17	고○옥	서울특별시 동작구 만양로 84, 100동 400호(노량진동,삼익아파트)				
						이○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195, 800동 400호 (마두동, 강촌마을)				
						고○수	서울특별시 동작구 만양로 84, 100동 400호(노량진동,삼익아파트)				
						동작구					
(기정)	110	"	373-72	대	119	김○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201, 100동 1600호(서초동, 서초푸르지오써밋)				
						강○훈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201, 100동 1600호(서초동, 서초푸르지오써밋)				
(변경)	110	"	373-72	대	13	김○희	충청북도 충주시 봉계1길 7,100동 2400호(봉방동, 충주푸르지오)				
						강○훈	충청북도 충주시 봉계1길 7,100동 2400호(봉방동, 충주푸르지오)				
	123	"	373-123	대	63	김○희	충청북도 충주시 봉계1길 7,100동 2400호(봉방동, 충주푸르지오)				토지분할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사항	
						강○훈	충청북도 충주시 봉계1길 7,10○동 240○호(봉방동, 충주푸르지오)				
	124	"	373-124	대	43	김○희	충청북도 충주시 봉계1길 7,10○동 240○호(봉방동, 충주푸르지오)				토지분할
						강○훈	충청북도 충주시 봉계1길 7,10○동 240○호(봉방동, 충주푸르지오)				
(기정)	111	"	26-74	도	110	서울특별시					
	111	"	26-74	도	14	서울특별시					
(변경)	125	"	26-79	도	92	서울특별시					토지분할
	126	"	26-80	도	3	서울특별시					토지분할
112~113		기정조서: 변경없음									
(기정)	114	"	177-1	도	12	건설교통부					
	114	"	177-1	도	11	건설교통부					
(변경)	127	"	177-13	도	1	동작구					토지분할
115		기정조서: 변경없음									
(기정)	116	"	170-12	대	59	기획재정부					
(변경)	116	"	170-36	대	1	기획재정부					토지분할

물 건 조 서

■ 사업명 : 동작구 복합청사건립 및 진입도로 등 개설사업

연번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수량 (연면적) (㎡)	구조 및 규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35	기정조서 : 변경 없음										
35	"	373-30 373-32 373-77	"	56.18	시멘블럭조 스레트지붕	고○옥	서울특별시 동작구 만양로 84, 100동 400호 (노량진동,삼익아파트)				
						이○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195, 800동 400호 (마두동, 강촌마을)				
						고○수	서울특별시 동작구 만양로 84, 100동 400호 (노량진동,삼익아파트)				
						동작구					
36~37	기정조서 : 변경 없음										

영 업 권 조 서

■ 사업명 : 동작구 복합청사건립 및 진입도로 등 개설사업

연번	소재지	지 번	세부구분	상 호 명	영업권 종류	영업자 성명	영업자 주소	비 고
1~19	기정조서 : 변경 없음							

◆ 송파구공고 제2023-170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국토교통부 고시 제198호(1971.4.7.),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19-10호(2019.1.17.)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0-133호(2020.12.3.)로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방아다리길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작성하고, 동법 제90조, 동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관계도서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를 합니다.
3. 관계서류는 송파구청 도로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일반인에게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5일

송 파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에 대한 사항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437-16번지 일원
(송파구 방이동 437-16번지 외 12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명칭 : 방아다리길 연결도로 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노선명	구분	폭원(m)	연장(m)	면적(㎡)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대로 3-69	결정	25~36	5,973	150,148	송파구오금동 (대2-67)	강동구 암사동 (중2-134)	일반 도로	-	건고198 (1971.4.7)	-
	인가	2.5~8.4	170	820	송파구 방이동 437-16	송파구 방이동 436-56	-	-	-	-
중로 1-A	결정	23.5	36.4	1,024	서울시계 방이동 443-28	방이동 437-16	일반 도로	-	송파구고시 제2019-10호 (2019.1.17)	-
	인가	23.5	36.4	1,024	서울시계 방이동 443-28	방이동 437-16	-	-	-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5) 사업시행 기간

- 당초 : 2020.12.3. ~ 2023.6.30.
- 변경 : 2020.12.3. ~ 2024.6.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생략(토지조서 변동 없음)

7) 위치도, 사업계획서, 실시설계도서 :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8)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9) 열람장소 : 송파구청 도로관리과(☎02-2147-3310)

사업소고시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3-4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쥬한화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	서울시계 내 한강 (마포대교 ~ 한강철교 사이)	선박 42척 (11,263㎡) 임시계류시설(1,032 ㎡)	2023년 서울세계불꽃축제 행사 중 선박운항	2023. 9. 23. ~ 2023. 10. 13.	2023.9.21.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3-4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치수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서울시계 내 한강 (행주대교 남단 ~ 잠실대교)	선박 13척 (3,695㎡)	한강저수로 준설공사	2023.8.21. ~ 2024.5.31.	2023.9.21.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3-4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치수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서울시계 내 한강 (잠실대교 ~ 강북취수장)	선박 4척 (803㎡)	한강상수원 (취수장주변) 준설공사	2023.8.21. ~ 2023.12.31.	2023.9.21.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3-4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재난안전관리실 교량안전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계 내 한강 (천호대교 인근)	선박 2척 (366㎡)	천호대교 정밀안전 진단 중 선박운항	2023.10.04. ~ 2023.10.15.	2023.9.21.

기 타

◆ 중랑소방서공고 제2023-01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5일

중 랑 소 방 서 장

업 종	상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일반 소방시설 관리업	쥬미래소방건설	제서울(중랑) -2023-0001호 (2023.9.22.)	전정배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897 8층	02-435-911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랑소방서 위험물안전팀(☎ 02-6981-890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3-29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안양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주)이제이텍 대표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33번길 10, 석정빌딩(구미동)
3. 점용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42-71번지
 - 면 적 : 42㎡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GTX-B노선 지반(시추)조사
 - 내 역 : 시추조사 2개소
5. 점용기간 : 2023.9.25. ~ 2023.10.2.(8일간)
6. 공사기간 : 2023.9.25. ~ 2023.10.2.(8일간)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